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42)

01 금융 · 재정 · 조세 (36)

기획재정부 (35)	33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국인, 1월)	33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상향 (청년(15~29), 1월)	34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 1월)	35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내국인, 1월)	36
5.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장애인, 1월)	37
6.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인·수증자, 1월)	38
7.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상속인, 1월)	39
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자, 1월)	40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부담부증여에 따른 납세의무자, 1월)	41
1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1월)	42
11.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일반 기업 및 개인, 1월)	43
12.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수출기업, 수출물품 생산기업, 1월)	44
13.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보세공장 운영기업, 1월)	45
14. 반도체 ·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반도체 ·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수입기업, 1월)	46
15.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차소비자, 16년 12월)	47
16.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수소차소비자, 1월)	48
1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전력회사, 4월)	49
1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 4월)	50
19.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일반납세자, 1월)	51
2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근로자, 사업자, 1월)	52
2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근로자, 1월)	53
2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자, 사업자, 1월)	54
23. 출산 · 입양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1월)	55
2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 1월)	56
2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자, 1월)	57
2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임대사업자, 1월)	58
27.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근로자, 사업자, 1월)	59
28.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근로자, 사업자, 1월)	60
2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외국인근로자, 1월)	61
3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 1월)	62
31.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중견기업, 1월)	63
3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 1월)	64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3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벤처창업자, 1월)	65
34.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경차소유자, 1월)	66
35. 로열텔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비자, 1월)	67

공정거래위원회 (1) 68

1.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일반기업, 7월)	68
-----------------------------	----

02 교육 (22)

고용노동부 (3) 71

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교육기관)	71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전연령)	72
3.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개편 (교육기관)	73

교육부 (18) 74

1.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청소년(13세~18세), 3월)	74
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교육기관)	75
3.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전연령, 상반기)	76
4. 공동 · 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교육기관, 16년 10월)	77
5.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교육기관, 16년 10월)	78
6.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중장년(19세~64세), 16년 11월)	79
7. 특수학급의 진로 ·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 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2월)	80
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교육기관, 2월)	81
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교육기관, 16년 11월)	82
10.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교육기관, 16년 11월)	83
11. 의무교육단계 학교밖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84
12.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 설비 기준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2월)	85
13.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청년~중장년(19세~64세), 1월)	86
14.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교육기관, 16년 10월)	88
1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 (전연령, 16년 8월)	89
16.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청소년(13세~18세), 17년 1월)	90
17.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교육기관, 16년 8월)	91
18.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청소년(13세~18세))	92

여성가족부 (1) 93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전연령, 상반기)	93
--------------------------------------	----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여성 · 육아 · 보육 (8)

고용노동부 (2)	97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1월)	97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반기업, 1월)	98
교육부 (1)	99
1.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6세~12세), 2월)	99
법무부 (1)	100
1.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전연령, 6월)	100
여성가족부 (4)	101
1. 한부모(미혼모 · 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01
2.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영유아(0세~5세), 1월)	102
3.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3월)	103
4.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청년~중장년(19세~64세), 상반기)	104

04 보건 · 사회복지 (31)

고용노동부 (10)	107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교육기관, 3월)	107
2.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일반기업, 1월)	108
3. 최저임금 인상 (일반기업, 1월)	109
4. 단기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으로 통합 (청소년~청년(15세~34세), 3월)	110
5.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대학생, 3월)	111
6.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청소년~청년(15세~34세), 1월)	112
7.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중장년(40세 이상), 1월)	113
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14
9.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15
1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16
농림축산식품부 (2)	117
1.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17
2.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18
법무부 (1)	119
1. 장애인 ·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2월)	119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10)	120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20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21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7년 1월)	122
4. 노인학대범죄 전력이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2월 30일)	123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3월)	125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공무원, 1월)	126
7. 희망키움통장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6년 10월)	127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28
9. 전국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29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30
여성가족부 (4)	131
1.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아동~청소년(9~18세), 1월)	131
2.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아동~청년(9세~24세), 상반기)	132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운영 (전연령, 1월)	133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어르신(64세 이상), 1월)	134
외교부 (1)	135
1.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상반기)	135
해양수산부 (2)	136
1. 낙도지역 어업인 의로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7월~10월)	136
2.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장 강화 (선원, 1월)	137
국가보훈처 (1)	138
1.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분기)	138

05 공공안전 및 질서 (21)

문화체육관광부 (1)	141
1.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업체, 1월)	141
여성가족부 (2)	142
1.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42
2.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143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1)	144
1. 수중레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안전한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 (전연령, 5월)	144
환경부 (4)	145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5월)	145
2.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일반기업, 1월)	146
3.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일반기업, 1월)	147
4.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일반기업, 16년 12월)	148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9
1.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일반기업, 2월)	149
2.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일반기업, 5월)	150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 (전연령, 1월)	151
국민안전처 (4)	152
1.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군로자, 16년 7월)	152
2.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일반기업, 1월)	153
3.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일반기업, 1월)	154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전연령, 1월)	155
관세청 (1)	156
1.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재지정 (수출입업체, 2월)	156
기상청 (3)	157
1.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 (아동 이상(6세 이상), 상반기)	157
2.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청년 이상(19세 이상), 3월)	158
3.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활용하기 (아동 이상(6세 이상), 6월)	159
공정거래위원회 (2)	160
1. 온라인 쇼핑물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일반기업, 2월)	160
2.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시행 (일반기업, 16년 12월)	161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06 국방·병무 (22)

국방부 (12)	165
1.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군인, 1월)	165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군인, 2018년 1월)	166
3.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군인, 2016년 12월)	167
4.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군인 전직지원기간(1~3개월) 부여 (군인, 1월)	168
5.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군인, 5월)	169
6. 병봉급 9.6% 인상(병장 기준, 197천원→216천원) (군인, 1월)	170
7.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군인, 1월)	171
8. 소 병영생활관 및 소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군인, 상반기)	172
9. 제주지역 거주·군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항공권 지원 (군인, 1월)	173
10.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군인, 3월)	174
11. 예비군 휴업 보상금 지급 제도개선으로 권익보장 (군인, 3월)	175
12. 병무행정 용어 정비 (군인, 2016년 11월)	176
방위사업청 (6)	177
1.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방위산업체, 6월)	177
2. 부당이익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방위산업체, 2016년 12월)	178
3.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방위산업체, 1월)	179
4.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방위산업체, 2016년 11월)	180
5.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방위산업체, 2016년 12월)	181
6. 방산원가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방산업체 이윤제도 개선 (방위산업체, 2016년 10월)	182
병무청 (4)	183
1.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시 결핵검사 신설 (청년, 1월)	183
2.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귀가자)가 복무시, 부대에 머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청년, 2016년 11월)	184
3.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청년, 3월)	185
4.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현월,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 (청년, 1월)	186

07 일반공공행정 (26)

교육부 (1)	189
1.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전연령, 2016년 11월)	189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5)	190
1.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1월)	190
2.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청년 이상(19세 이상), 1월)	191
3.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청년 이상(19세 이상), 7월)	192
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1월)	193
5.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재계약 기준 개선 (청년 이상(19세 이상), 2016년 12월)	194
법무부 (5)	196
1.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1월)	196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전연령, 5월)	197
3.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전연령, 6월)	198
4.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 절차 생략 (청소년 이상(19세 이상), 4월)	199
5.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전연령, 4월)	200
행정자치부 (3)	202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청년이상(18세 이상), 5월)	202
2.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 · 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청년~중장년(19세~64세), 5월)	203
3. 주민등록 서비스개선(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이용한 신분확인 등) (청년이상(18세 이상), 6월)	204
외교부 (3)	206
1.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재외국민, 1월)	206
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전연령)	207
3. 주재국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 공증 신청가능 (전연령, 3월)	208
해양수산부 (2)	209
1.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절차 개선 (일반기업, 3월)	209
2. 선박출입신고 등 항만민원신고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일반기업, 2월)	210
환경부 (3)	211
1.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일반기업, 6월)	201
2.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 · 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일반기업, 1월)	202
3.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일반기업, 1월)	203
인사혁신처 (1)	214
1.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전연령, 1월)	214
공정거래위원회 (2)	215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선 (소비자, 1월)	215
2.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청년 이상(19세 이상), 2016년 11월)	216
국민권익위원회 (1)	217
1.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전국민)	21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08 농림·해양·수산 (46)

농림축산식품부 (23) 221

1. 발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 1월)	221
2.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음식점등, 1월)	222
3.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농업인, 1월)	223
4.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산지유통업체, 10월)	224
5.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농업인, 1월)	225
6.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농업인 등, 6월)	226
7. 시설원에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지자체, 4월)	227
8.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전국민, 1월)	228
9.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농업인 등, 1월)	229
10.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농업인, 6월)	230
11.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7월)	231
12.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전국민, 6월)	232
13.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 2월)	233
1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농업인, 1월)	234
15.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농업인 등, 12월)	235
16.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일반기업, 12월)	236
17.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전국민, 12월)	237
18.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일반기업, 12월)	238
19.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농업인 등, 12월)	239
20.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일반기업, 12월)	240
21.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일반기업, 12월)	241
22.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일반기업, 3월)	242
23.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농협중앙회, 1월)	243

해양수산부 (15) 244

1.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전연령, 1월)	244
2.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양국무허가 어선, 1월)	245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수협중앙회, 2016년 12월)	246
4. 해상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일반기업, 1월)	247
5.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상품 개발 (양식재해보험, 6월)	248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 (한미 FTA, 1월)	249
7.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일반기업, 2016년 12월)	250
8. 수산 벤처·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51
9. 생분해성 꽃게자랑 규격 다양화 및 희망 규격별 신청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월)	252
10.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 (일반기업, 1월)	253
11.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일반기업, 5월)	254
12.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일반기업, 1월)	255
13.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 (일반기업, 1월)	256
14.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분양환경 조성 (일반기업, 6월)	257
1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항만공사, 1월)	258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 (8)	260
1.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농업인, 6월)	260
2.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임업인, 6월)	261
3.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및 공공기관, 6월)	262
4. 국유림 소액대부로 일괄 징수제 도입 (임업인, 6월)	263
5. 귀산촌인 융자지원 확대 (임업인, 1월)	264
6.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임업인, 7월)	265
7.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전연령, 1월)	266
8.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전연령, 1월)	267

09 국토개발 (1)

해양수산부 (1)	271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일반기업, 1월)	271

10 산업·에너지·자원 (17)

미래창조과학부 (3)	275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전국민, 2016년 12월)	275
2.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일반기업, 6월)	276
3. TV 대역 가용주파수' 민간이용 가능 (전국민 2016년 11월)	277

관세청 (1)	278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간소화 (수출입업체, 1월)	278

문화재청 (1)	279
1.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청년 이상(19세 이상), 2월)	279

산림청 (2)	280
1.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일반기업, 6월)	280
2.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일반기업, 6월)	281

조달청 (2)	282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인증평가 축소 (일반기업, 1월)	282
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인증평가 축소 (일반기업, 1월)	283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
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6)	284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월)	284
2.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16년 11월)	285
3.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월)	286
4. 중소·중견기업 R&D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16년 12월)	287
5.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한 기술보호 수단 확대 (전국민, 1월)	288
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6월)	289
특허청 (1)	290
1.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일반기업, 3월)	290
방송통신위원회 (1)	291
1.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전국민, 2월)	291

11 환경 (12)

해양수산부 (3)	295
1.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해양생물, 1월)	295
2.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울산연안해역, 6월)	296
3.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항만구역, 3월)	297
환경부 (9)	298
1.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일반기업, 1월)	298
2.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전연령, 1월)	299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300
4.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301
5.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302
6.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지자체 및 공공기관, 1월)	303
7.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지자체 및 공공기관, 5월)	304
8.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일반기업, 1월)	305
9.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론산염 추가 (일반기업, 1월)	306

별첨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신·구 대비표)	307
-----------------------------------	-----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179)

경차소유자 (1)

기획재정부 (1)

1.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34

공무원 (1)

보건복지부 (1)

1.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126

교육기관 (11)

고용노동부 (3)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107
2.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71
3.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개편 73

교육부 (8)

1.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75
2. 공동 · 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77
3.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78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81
5.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82
6.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83
7.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88
8.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91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군인 (12)

국방부 (12)

1.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165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166
3.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167
4.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군인 전직지원기간 부여	168
5.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169
6. 병봉급 9.6% 인상(병장 기준, 197천원→216천원)	170
7.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171
8.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172
9.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항공권 지원	173
10.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174
11. 예비군 휴업 보상금 지급 제도개선으로 권익보장	175
12. 병무행정 용어 정비	176

근로자 (6)

고용노동부 (1)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97
-------------------------------------	----

기획재정부 (4)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53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55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56
4.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57

국민안전처 (1)

1.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152
------------------------------	-----

근로자, 사업자 (4)

기획재정부 (4)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52
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54
3.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59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60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국법인 (2)

기획재정부 (2)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62
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64

내국인 (3)

기획재정부 (3)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3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5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36

농업인 (11)

농림축산식품부 (10)

1. 발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21
2.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223
3.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225
4.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226
5.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229
6.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230
7.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33
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234
9.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235
10.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239

산림청 (1)

1.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26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1)

기획재정부 (1)7

1.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42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1)

1.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 경제지주 본격 출범243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대학생 (1)

고용노동부 (1)

1.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111

반도체 ·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수입기업 (1)

기획재정부 (1)

1. 반도체 ·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46

방위산업청 (6)

방위사업청 (6)

1.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177
2.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178
3.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179
4.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180
5.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181
6. 방산원가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방산업체 이윤제도 개선 182

벤처창업자 (1)

기획재정부 (1)

1.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65

보세공장 운영기업 (1)

기획재정부 (1)

1.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45

부담부증여에 따른 납세의무자 (1)

기획재정부 (1)

1.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41

비사업용토지 양도자 (1)

기획재정부 (1)

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40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지유통업체

농림축산식품부 (1)

1.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224

상속인 (1)

기획재정부 (1)

1.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39

상속인 · 수증자 (1)

기획재정부 (1)

1. 신고세액공제 축소 38

소비자 (2)

기획재정부 (1)

1.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67

공정거래위원회 (1)

1.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운영개시 215

수소차소비자 (1)

기획재정부 (1)

1.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48

수출 중소기업 (1)

기획재정부 (1)

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50

수출기업, 수출물품 생산기업 (1)

기획재정부 (1)

1.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44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수출입업체 (2)

관세청 (2)

1.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재지정 156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간소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농림축산식품부 (1)

1.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대상 확대 231

신차소비자 (1)

기획재정부 (1)

1.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7

외국인근로자 (1)

기획재정부 (1)7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61

유원시설업체 (1)

문화체육관광부 (1)7

1.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141

일반 기업 및 개인 (1)

기획재정부 (1)

1.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43

일반기업 40)

고용노동부 (3)

1.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 확대 108
2. 최저임금액 인상 109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98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5)

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236
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238
3.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240
4.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241
5.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242

미래창조과학부 (1)

1.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276

해양수산부 (10)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271
2. 해상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247
3.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절차 개선 209
4.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250
5.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 253
6. 선박출입신고 등 항만민원신고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210
7.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254
8.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255
9.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 256
10.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 분양환경 조성 257

환경부 (9)

1. 사업장 허가 ·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298
2.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211
3.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 · 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212
4. 폐기물 수집 · 운반 기준 강화 시행 305
5. 냉매 제조 · 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146
6. 오염도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147
7.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론산염 추가 306
8. 위해우려제품 안전 · 표시기준 강화 148
9.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213

식품의약품안전처 (2)

1.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149
2.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150

국민안전처 (2)

1.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153
2.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154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산림청 (2)

1.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280
2.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281

조달청 (2)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인증평가 축소 282
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인증평가 축소 283

특허청 (1)

1.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290

공정거래위원회 (3)

1. 온라인 쇼핑물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160
2.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시행 161
3.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68

일반납세자 (1)기획재정부 (1)

1.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51

임대사업자 (1)기획재정부 (1)

1.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58

임업인 (4)산림청 (4)

1.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261
2.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263
3. 귀산촌인 융자지원 확대 264
4.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265

음식점 등 (1)농림축산식품부 (1)

1.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222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1)

기획재정부 (1)

1.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37

전국민 (8)

농림축산식품부 (3)

1.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228
2.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강화 232
3.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237

미래창조과학부 (2)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275
2. TV 대역 가용주파수' 민간이용 가능 277

중소기업청 (1)

1.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한 기술보호 수단 확대 288

국민권익위원회 (1)

1.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217

방송통신위원회 (1)

1.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291

전력회사 (1)

기획재정부 (1)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조정 49

재외국민 (1)

외교부 (1)

1.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206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

기획재정부 (1)

1.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63

해양수산부 (2)

1. 수산 벤처·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251
2.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 다양화 및 희망 규격별 신청 252

중소기업청 (5)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284
2.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285
3.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286
4. 중소·중견기업 R&D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지원 287
5.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확대..... 289

지자체 및 공공기관 (10)

농림축산식품부 (1)

1. 시설원에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227

여성가족부 (2)

1.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103
2.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143

환경부 (6)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300
2.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301
3.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302
4.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303
5.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304
6.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145

산림청 (1)

1.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262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4)

고용노동부 (3)

-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114
- 2.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115
-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116

교육부 (3)

- 1.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80
- 2. 의무교육단계 학교밖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84
- 3.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85

농림축산식품부 (2)

- 1.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117
- 2.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118

법무부 (2)

- 1.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196
- 2.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119

보건복지부 (9)

-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120
-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121
-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22
-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123
-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125
- 6.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127
- 7.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128
- 8. 전국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129
- 9.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30

여성가족부 2)

- 1.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101
- 2.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142

외교부 (1)7

- 1.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135

해양수산부 (1)

- 1.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136

국가보훈처 (1)

- 1. 경기도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138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69)

영유아(0세~5세) (1)

여성가족부 (1)

1.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102

아동 이상(6세 이상) (2)

기상청 (2)

1.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 157
2.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활용하기 159

아동(6세~12세) (1)

교육부 (1)

1.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99

아동~청소년 (9세~18세) (1)

여성가족부 (1)

1.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131

아동~청년 (9세~24세) (1)

여성가족부 (1)

1.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132

청소년(13세~18세) (3)

교육부 (3)

1.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74
2.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90
3.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92

청소년~청년(15세~34세) (2)

고용노동부 (2)

1. 단기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으로 통합 110
2.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112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소년~청년(15세~29세) (1)

기획재정부 (1)

1.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상향	34
----------------------------	----

청년~중년(18세~40세) (8)

국방부 (8)

1.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167
2.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 의무병' 제도 신설	169
3. 병봉급 9.6% 인상(병장 기준, 197천원→216천원)	170
4.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171
5.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172
6.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항공권 지원	173
7.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174
8. 예비군 휴업 보상금 지급 제도개선으로 권익보장	175

청소년 이상(18세 이상) (3)

법무부 (1)

1.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199
-----------------------------	-----

행정자치부 (2)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2
2.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 이용한 신분 확인 등)	204

청년 이상(19세 이상) (16)

국방부 (3)

1.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165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166
3.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군인 전직지원기간 부여	168

국토교통부 (3)

1.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191
2.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92
3.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93

인사혁신처 (1)

1.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214
------------------	-----

기상청 (1)

1.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158
---------------------	-----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1)

2.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279
-----------------	-----

방위사업청 (7)

4.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177
5.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178
6.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179
7.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180
8.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181
9. 방산원가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방산업체 이윤제도 개선	182
10.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190

청년(19세~29세) (4)

병무청 (4)

1.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시 결핵검사 신설	183
2.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귀가자)가 복무시, 부대에 머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184
3.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185
4.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현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	186

청년~중장년(19세~64세) (4)

여성가족부 (1)

1.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104
--------------------------	-----

교육부 (2)

1.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79
----------------------------------	----

행정자치부 (2)

1.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86
2.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203

중년이상(40세 이상) (1)

고용노동부 (1)

1.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113
--------------------	-----

어르신(64세 이상) (1)

여성가족부 (1)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134
------------------------	-----

Contents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연령 (19)

여성가족부 (2)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93
-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운영 133

교육부 (3)

- 1.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189
- 2.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76
- 3.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 151

고용노동부 (1)

- 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72

산림청 (2)

- 1.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266
- 2.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267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 151

해양수산부 (2)

- 1.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244
- 2. 수중레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안전한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 144

환경부 (1)

- 1.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299

국방부 (1)

- 1. 병무행정 용어 정비 176

법무부 (3)

-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97
- 2.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198
- 3.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100

국민안전처 (1)

-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155

법무부 (1)

- 1.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시행 200

외교부 (2)

- 1. 해외이주알선등록 결격사유 완화 207
- 2. 주재국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 공증 신청가능 208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 금융·재정·조세
2. 교육
3. 여성·육아·보육
4. 보건·사회복지
5. 공공안전 및 질서
6. 국방·병무
7. 일반공공행정
8. 농림·해양·수산
9. 국토개발
10. 산업·에너지·자원
11. 환경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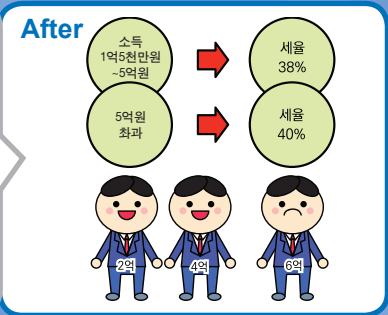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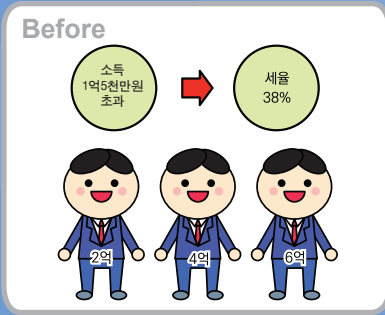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시행일 : 2017년 1월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30%,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도입

- 추진배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조정·확대
 - 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 등 추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 (대상 시설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창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75% 감면 (이후 2년 간은 50% 감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 추진배경 :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 주요내용
 - 감면요건
 -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 공제액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75% 감면(이후 2년 간은 50% 감면)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 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제작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이 해당합니다.
- 공제율은 제작비용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 주요내용
 -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044-215-44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
(부분복귀)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 100%(3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50% 감면

-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을 수도권 중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분축소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고용창출 지원
- 주요내용
 - (대상기업) 부분복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 (부분복귀시 요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 (지역범위)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추가)
 -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배 확대 (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5.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일반 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였으나,
 -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일반 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
- 주요내용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 현행 :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 신탁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5억원 한도)
 - 개정 :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5억원 한도)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6. 신고세액공제 축소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개정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고세액공제 축소

- 추진배경 공제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공제율 10%
 - 개정 : 공제율 7%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7.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 차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합니다.

● 공제금액

- 현행 : 상속주택가액 × 80%
- 개정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동거주택상속 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 추진배경 공제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 현행 : 상속주택가액 × 80%
 - 개정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4)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하게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현행 : 2016. 1. 1.
- 개정 : 토지 취득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 추진배경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주요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현행 : 2016. 1. 1.
- 개정 : 토지 취득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 현행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 추진배경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 주요내용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 현행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4)

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고향주택 1채를 취득한 후, 농어촌·고향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고향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어촌·고향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116㎡) 이내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 2017.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고향주택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추진배경 농어촌 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 삭제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1.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개인수입화물 등 전문대리인 선임의 부담이 큰 소액사건은 관세 불복청구*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불복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소액사건(불복청구 금액 3천만원 미만)은 변호사, 관세사 외에도 ‘배우자’ 및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변호사, 관세사

- 개정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
 - 현행 : 변호사, 관세사
 - 개정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2.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044-215-4414)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가격이 수입통관 이후에 높게 확정될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과의 상계를 허용*합니다.

- * ① 원재료 수입가격이 신고납부 이후 높게 확정 시 추가 납부세액 발생
- ②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완제품 수출 시 추가납부 세액(①)에 대한 환급 발생

- 당초 수입가격이 수입통관 이후 확정되는 원유 등의 경우 원재료에 대한 추가세액 납부 후 완제품에 대한 추가환급 신청이 필요하였으나, 이제 상계 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행 : 추가 세액 납부 → 추가 환급금 신청 (2단계)
- 개정 : 추가 세액과 추가 환급금 상계 신청 가능 (1단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절감
- 주요내용
 - 추가로 납부할 원재료 세액과 수출완제품 추가 환급세액의 상계를 허용
 - 현행 : 추가 세액 납부 → 추가 환급금 청구 (2단계)
 - 개정 : 추가 세액과 추가 환급금 상계 신청 (1단계)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3.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수출물품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수입원재료 투입 시 관련법령*상 요건 확인을 면제하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주요 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 보세공장 생산 완제품에 대해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투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의무 완화

- 현행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 모두 관련법률 준수여부 증명 의무

- 개정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 의무 면제

* 다만, 총기류 등 일부품목은 증명 의무 면제 제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 추진배경 보세공장 운영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 투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의무 완화
 - 현행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 모두 관련법률 준수여부 증명 의무
 - 개정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 의무 면제
- 시행일 2017년 1월 1일(관세청장이 「증명 의무 면제 제외대상 고시」 이후)

14.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첨단 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 및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유예합니다.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1년 유예합니다.
 - 현행 : (감면율) '17년 40%, '18년 20%
 - 개정 : (감면율) '17년 60%, '18년 40%, '19년 20%
-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2년 유예합니다.
 - 현행 : (감면율) '17년 80%, '18년 60%, '19년 40%, '20년 20%
 - 개정 : (감면율) '17년 100%, '18년 100%, '19년 80%, '20년 60%, '21년 40%, '22년 2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 추진배경 첨단 장비산업 지원
- 주요내용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 1년 유예
 - 현행 : (감면율) '16년 60%, '17년 40%, '18년 20%
 - 개정 : (감면율) '16년 60%, '17년 60%, '18년 40%, '19년 20%
 -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 2년 유예
 - 현행 : (감면율) '16년 100%, '17년 80%, '18년 60%, '19년 40%, '20년 20%
 - 개정 : (감면율) '16년 100%, '17년 100%, '18년 100%, '19년 80%, '20년 60%, '21년 40%, '22년 20%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5.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노후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 요건	① '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세제 혜택 (신차)	·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 ·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요건 미 충족시 추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 40% 상당 가산세
시행 기간	· '16.12.5~'17.6.30 * '16.12.5부터 '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추진배경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 주요내용 '06.12.31.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6. 6.30.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이후 신차를 신규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16.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 면제한도 : 대당 400만원*

*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중

- 적용기한 : 2019.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 현행 : 기본세율 24원/kg, 탄력세율 21·27원/kg(저·고열량탄)
- 개정 : 기본세율 30원/kg, 탄력세율 27·33원/kg(저·고열량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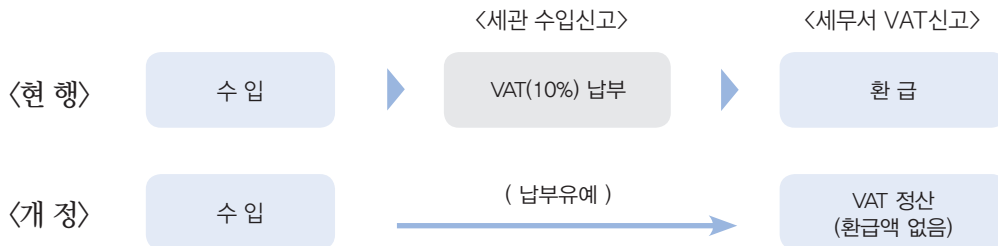
- 추진배경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
- 주요내용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 시행일 2017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 추가
- 적용대상 확대로 수출 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이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수출 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현행 :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 추가
- 시행일 2017.4.1.(잠정, 시행령 개정 예정)

19.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은 인용결정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은 되나, 구체적인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 추진배경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 (재조사 결정 요건)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재조사 범위·기간)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및 후속처분
 - (후속처분 범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 취소 또는 경정(당초 처분 유지는 불가)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납세자 선택 허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에 후속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기간) 바로 행정소송 제기시 처분결과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시 결정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 단, 기간 내 통지 미수령시 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추진배경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
- 주요내용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7)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8.12.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으며,
-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18.1.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총급여액	종전	개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 ('18.1.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4)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 77, 홑벌이 170 → 185, 맞벌이 210 → 230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구 분	종 전	개 정
단독 가구	70만원	77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	185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	230만원

-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
-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3.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7)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만원) : 30
- 개정(만원) :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출산지원 등
- 주요내용 ·출산 등 세액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첫째	30만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7)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주요내용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7)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행(공제율) : 15%
- 개정(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20%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추진배경 출산 등 지원
- 주요내용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대상	종전	개정
의료비	15%	15%
난임시술비		20%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18.12.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 하고,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적용기한은 '18.12.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
- 주요내용
 - 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③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7.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6)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나이요건〉

- 현행 :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
- 개정 : 나이요건 폐지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 추진배경 기부 활성화
- 주요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나이요건 폐지
 - 현행 :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하 직계존속
 - 개정 : 나이요건 폐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제한도를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사업·근로 소득금액	종 전	개 정
4천만원 이하	300만원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7)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과세형평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특례세율 조정
 - (현행) 17% → (개정) 19%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44-215-4223)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벤처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출자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공제율) 출자금액의 5%
 - (사후관리)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자 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1.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44-215-4223)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허용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요건 :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 추진배경 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 주요내용
 -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요건)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44-215-4223)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이연합니다.

- 이연방법 :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추진배경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세제지원을 통한 활성화
-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기한) '19.12.31.
 -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44-215-422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을 30% 초과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추진배경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여 벤처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축
- 주요내용
 - (현금지급비율 완화)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 완화(80% 초과 → 50% 초과)
 - (주식인수 비율)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취득비율 30% 초과로 하향 조정
 - (주식배정 허용)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을 허용. 단, 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4.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2)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 대상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보유자
- 혜택 :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
 - 현행 : 적용기한 2016.12.31.
 - 개정 : 적용기한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 추진배경 경차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시행일 2017년 1월

3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추진배경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 고려
- 주요내용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과 ☎ 044-200-4334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요건이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현행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 ①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자산요건), ②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요건)

- 2017년 7월 1일부터는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상 세제혜택도 부여됨

- 개정 시행령 시행일('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자산 1~5천억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자산요건(5천억원 이상)을 충족하거나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황

- 추진배경 경제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지주회사 자산요건 합리화
- 주요내용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 기존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자산요건을 충족하거나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 필요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02 교육

고용노동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1

교육부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2016년 12월 5일

Before

신설

After



특수학급에도 직업교육실 설치,
필요한 인력, 경비지원

2

교육부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Before

신설

After



개인과외 교습시 표지부착 의무화,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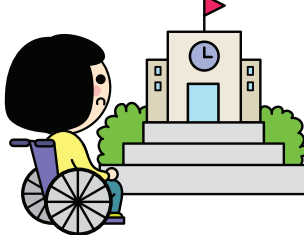
3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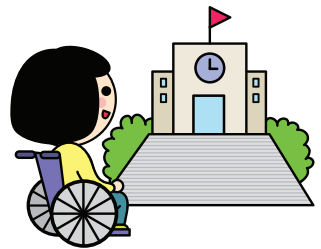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시행일 : 2016년 12월 5일

Before



After



4

교육부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80개교 운영

After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300개교 이상 운영 예정

5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Before

신설

After



1.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0)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합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융합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 우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융합SW(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시스템(스마트팩토리 실무)과정이 '17년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입니다.
-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2017년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에 직업훈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필요
- 주요내용
 - ①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하여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 훈련 종료 후 우수과정은 매뉴얼화하여 공개
 - ②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집중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훈련기관 공모, 2월~ 훈련생 모집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훈련 직종별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편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낮추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높여 취업성과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됩니다.
 -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기존 30%)로 확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2017년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 추진배경 취업성과와 훈련생 개인부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성과 직종 훈련 확대
- 주요내용 ①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 20~50%→5~80%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 : 0~30%→0~50%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를 반영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 2016년 현재 114개 직종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훈련실적이 없고, 성과가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핀테크,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을 새롭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또한, 그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비정기적으로 개편해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국가인력양성 협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개편 계획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 반영
- 주요내용
 - ① 훈련실적 및 성과 저조 직종 제외
 - ②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 포함
 -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정례화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1.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 교육부 | 교수학습평가지원팀 (☎ 044-203-7031)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연계하여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 학교급별 및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 절차, 채점 기준 및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방식을 보완하고 기재 예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교과별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등 과정중심 수행평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 훈령 개정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한다.
- ▶ 정보공시 강화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에 수행평가 시기 및 평가 내용(요소) 등을 포함하여 공개

창의교육 학생평가 시스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 주요내용 ① (현장 지원)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 절차, 채점 기준 및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과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보급
② (정보공시 강화)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에 세부 평가 내용(요소) 등을 포함하여 공개
- 시행일 2017년 3월

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 교육부 | 대학평가과 (☎ 044-203-6806)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 하였습니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확인하던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등에 더해 대학이 국제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적응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였고,
 -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학연수기관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국제학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학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전체 고등교육기관이 국제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추진배경**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 함으로써, 우수 국제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국제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제고
- **주요내용**
 - ① 평가대상 확대: 학부과정→ 학부과정+ 어학연수과정
 - ② 대학의 국제학생 생활 적응 및 학업지원 등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지표 추가
 - ③ 국제학생 불법체류율, 의료보험률 등 평가지표를 대학 실정에 맞게 개선
- **시행일** 2016년 9월

3.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 교육부 | 대학재정과 (☎ 044-203-6611)

2017년에는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 국내 우수대학의 명품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입니다.
 - K-MOOC는 2015년부터 27개 강좌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0여개 강좌를 개설하여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또,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여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K-MOOC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K-MOOC 홈페이지(www.kmooc.kr)

K-MOOC 강좌확대 및 모바일앱 서비스 시작

- 추진배경 K-MOOC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욕구 부응 및 학습편의 제고
- 주요내용 - K-MOOC 신규강좌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강좌 확대
- 모바일 앱 개발 및 서비스 실시
- 시행일 2017년 1월 중

4.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89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제15조제1호가목)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하여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대학으로의 유학생 유치가 촉진되고,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국·내외 학위취득 및 외국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상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학점 인정범위 확대

- 추진배경 「고등교육법」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 확대
- 주요내용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
- 시행일 2016년 10월 25일

5.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 교육부 | 이러닝과 (☎ 044-203-6421)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문대학만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업연한 단축 학교현장 착근을 위해 해당대학들이 이번 법령 개정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정사항이 학칙에 반영되는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소요기간도 단축됩니다.

[참고] 교육부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도입

- 추진배경 같은 학제 고등교육기관 간 동일기준 적용
※ 전문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가능,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불가
- 주요내용 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단축 불가→가능)
② 개정사항 학칙반영 협조 요청
- 시행일 2016년 10월

6.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 교육부 | 대학장학과 (☎ 044-203-6269)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 성적이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됩니다.

*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14년이후 입학자('93.1.1이후 출생자))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국가장학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 공표로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기별로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7.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16.11.17~12.13), 2차('17.2.27~3.9)

※ '17.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17.5월말~6월초), 2차('17년 8월말~9월초)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 추진배경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①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기초~소득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5만원)
 - ②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자체기준에 따름
 -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14년 이후 대학입학자 중 소득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단, '93.1.1이후 출생자에 한함) 대학생 대상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소득2분위 이하는 520만원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816)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교육감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 지원 등 인력과 경비 지원
-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044-203-6541)

2017년부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이 시행(‘17.2.4.)되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택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주변을 정비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 평가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평가서가 작성기준에 맞지않게 작성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확인한 결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금지 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의 교육환경보호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시행

- 추진배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 주요내용
 - 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장관, 5년 주기)/시행계획 수립(교육감, 매년)
 - 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 ③ 교육환경평가 대상 확대
 - 기존 정비사업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이상 건축행위 추가
 - ④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의 강화
 - 교육감의 승인내용 이행사항 조사·확인 및 필요 시 사후교육환경평가 요구
 - 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가능
 - ⑥ 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시행일 2017년 2월 4일

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81)

학점은행제 기관의 운영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15.3.27)에 따라 '16.9월부터 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학습자가 기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16.11.23부터 기관의 정보들을 통합하여 공개하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학점은행제 알리미', www.cbinfo.or.kr)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개통

- 추진배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
- 주요내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현황 등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가능
- 시행일 2016년 11월 23일

10.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 교육부 | 학원정책팀 (☎ 044-203-63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16.11.30.시행)으로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개인과외 운영의 투명성 및 학습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또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부착 표지 서식〉



- ▶ 재질 : 자율로 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
- ▶ 색깔 : 바탕-흰색, 글자-검정색
- ▶ 내용 : 우측 상단-신고번호, 정중앙-개인과외교습자 표시, 하단 중앙-교습과목
- ▶ 글자체 : 자율
- ▶ 글자비율 : '교육지원청 신고번호·개인과외교습자·교습과목'의 글자크기 비율은 13:24:13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부착 신설

- 추진배경 개인과외교습 운영의 투명성 및 학습자의 알 권리 강화
- 주요내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지 부착 의무 신설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11. 의무교육단계 학교밖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044-203-6453)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연령 도과 등으로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 2017년부터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비용도 지원하여, 학교밖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학교밖 학생이 교육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초·중 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2017년 시범사업(5개지역 내외)을 실시하여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거쳐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정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자료>학업 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방안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계획 추진

- 추진배경 학교밖 학생들이 언제·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교육감 직접 개설·위탁* 프로그램,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학습비용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에서 운영 중인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 프로그램(국제교육·종교교육 프로그램은 지정 불가)
②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취득 인정
- 시행일 2017년(시범사업) → 2018년(전국확대)

12.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907)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령정비를 하였습니다.

* '16.12월 중 시행 예정

-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 장애특성·유형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 면적을 정하는 학급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하여 교지 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 순회학급의 교지 기준 면적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특수학교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 추진배경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특성·유형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 시설 강화와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령 정비
- 주요내용
 - ①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 강화
 - ② 특수학교 교지 기준 면적 명확화(교지 기준 면적에 순회학급 제외)
 - ③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 적용 등
-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13.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 교육부 | 대학장학과 (☎ 044-203-6270)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차·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연장하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50% 감면하겠습니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장학재단법」 12%)을 연체구간별 3%p 인하(3개월 이하 10→7%, 3개월 초과 12→9%)하겠습니다.
- 아울러,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대출원금 30%와 이자를 면제하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연도별 운용수익 활용

- 한국장학재단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 지자체별로 재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을 원하는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45세까지 완화하여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강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 각 1회씩 추가 연장,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최대 2년간) 및 연체이자 50% 감면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35세→만45세)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4.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교육부 | 이러닝과 (☎ 044-203-6421)

2016년 10월부터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학교명칭 사용이 자율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대학교’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 추진배경 같은 학제 고등교육기관 간 동일기준 적용
- 주요내용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교’ 명칭도 사용 가능
- 시행일 2016년 10월

1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기준 완화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266)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 인구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학력인정 문해교육(중학교 과정)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 2016.8.4. 공포된 개정법령에 따라 대학졸업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고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농어촌 등 문해교육 소외지역의 교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 또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교원 양성을 위한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문해교육 교원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문해교육 활성화(문해교원 부족)
- 주요내용
 - ①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 자격기준 완화(교사자격증 소지자→대학졸업이상 학력 소지자 중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②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확대
- 시행일 2016년 8월 4일

16.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교육부 | 공교육진흥과 (☎ 044-203-6715)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 2016년과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예정)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를 확대해나가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한 학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공교육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유학기제 홈페이지(www.ggoomggi.go.kr)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

- 추진배경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타학기·타학년으로 연계하여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 필요
- 주요내용 ①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중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하여 편성·운영
② 학교 구성원의 의지,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선정 예정
- 시행일 2017년 1월

17.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 교육부 | 진로교육정책과 (☎ 044-203-7037)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여 진로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인증을 통해
 -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참여를 유도하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 인증기관은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으며,
 - ‘꿈길’ 사이트 내 인증기관 탑재, 인증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 추진배경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처의 진로체험 제공 참여 촉진
- 신청대상 「진로교육법」 제19조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인증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기업, 개인사업자* 등
 - * 작가,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제외
- 시행일 2016년 8월 16일

18.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 교육부 | 교수학습평가지원팀 (☎ 044-203-7034)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되어 왔던 학생부를 상시 관찰과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재 예시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기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관련 연수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자료>교육부,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 등에 따른 학생부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 요구 증대
- 주요내용
 - ① 진로희망사항 : 학생 중심의 '진로희망' 과 '희망사유' 를 기재
 - ② 교과학습발달상황 : 수업 참여 태도와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과정 및 성취도를 중심으로 기록
 - ③ 독서활동상황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 중심으로 교사가 확인하여 기재
 - ④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의 변화와 성장 등을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기록
- 시행일 2017년 3월 1일(단, 명예졸업 관련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시행)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02-2100-6335)

부모교육 기반을 체계화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합니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과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및 연계하여 드립니다.
-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를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 *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족갈등 문제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20회기)하고, 생활환경 관리교육, 노무·법률·의료 상담 연계 및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
-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전국 1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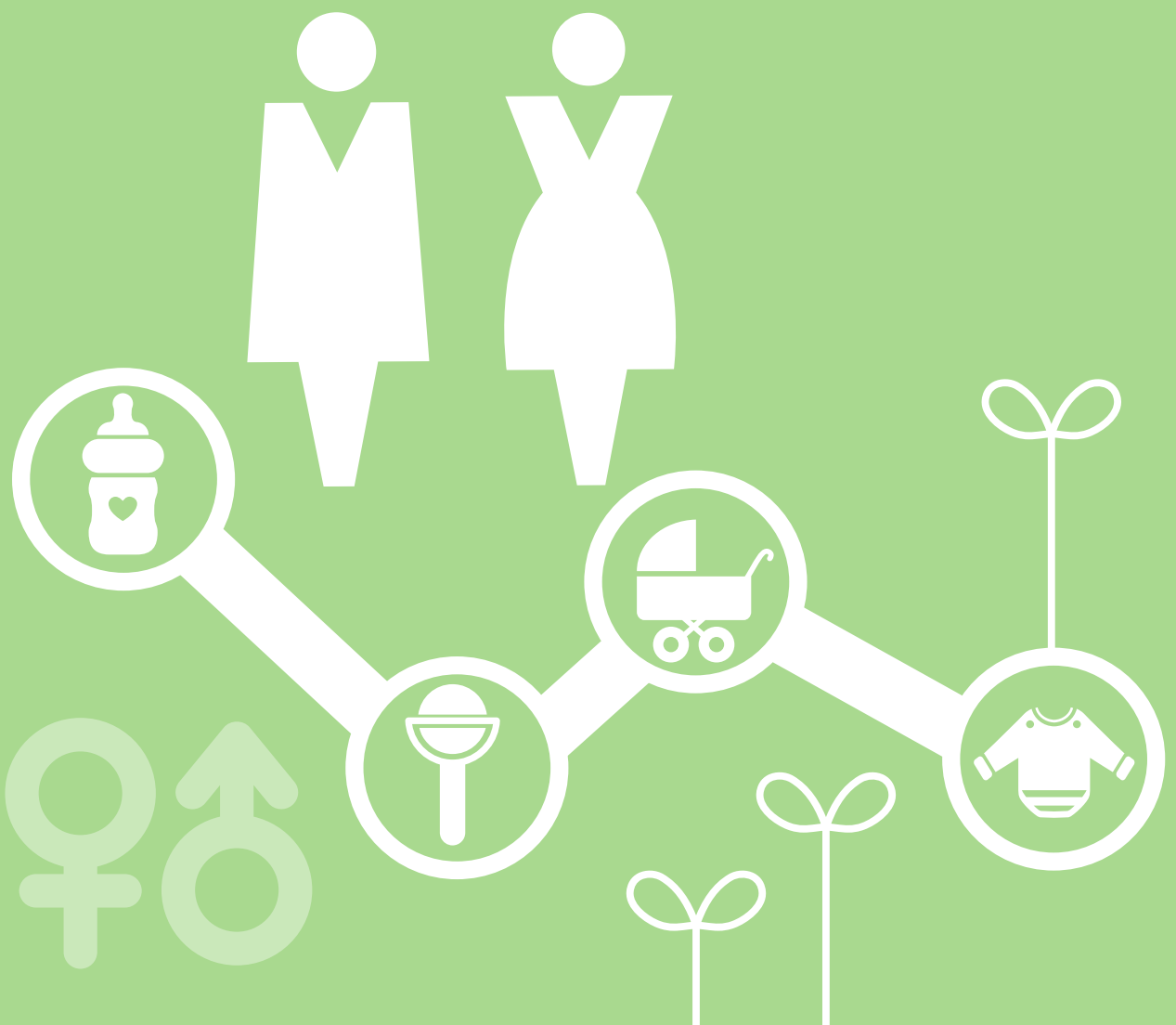
|참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9337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추진배경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어,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필요
- 주요내용
 - ①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
 - ②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 실시
 - ③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시행일 2017년 상반기

03 여성·육아·보육

고용노동부 | 교육부 | 법무부 | 여성가족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17년 1월

Bef

135만원



A

150만원



2

법무부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시행일 : 201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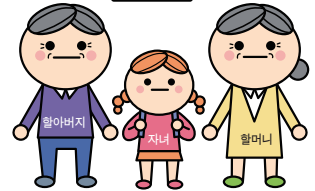
Before

면접교섭권



After

면접교섭권 가정법원



3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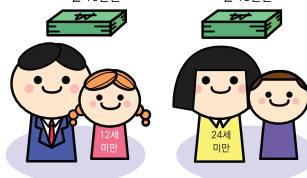
한부모(미혼모 · 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1인당
월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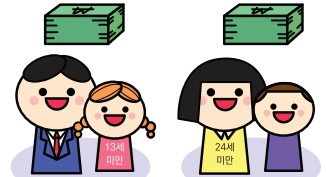
1인당
월 15만원



After

1인당
월 12만원

1인당
월 17만원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금지 및 교육 의무화

4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계좌이체



After

국민행복카드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7년 사업내용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추진배경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 확산 도모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추진배경 근로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 허용시 월 30만원 지급(대규모기업은 폐지)
 - ②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추가 지급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지급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부 | 방과후학교지원과 (☎ 044-203-6372)

(예비)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나,
 - '17년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하여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참고|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www.neis.go.kr)

나이스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선

- 추진배경 (예비)학부모가 돌봄교실 관련 정보, 신청현황 등을 조회하여 돌봄교실 참여 여부를 사전에 선택·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
- 주요내용
 - ① 돌봄교실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절차 온라인으로 진행
 - 학교현황, 신청집계현황 정보 제공
 - 접수완료, 배정 상황 SMS발송 서비스 제공
 - ② 돌봄교실 출결상황, 퇴실시각, 동행인 등 조회 기능 제공
- 시행일 2017년 2월

1.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6)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부터는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 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할아버지·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민법 검색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 추진배경 면접교섭권자의 확대
- 주요내용 ① 일정한 경우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까지 면접교섭권 확대
②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1.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02-2100-6345, 6342)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17년부터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5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7년부터는 월 17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금지 및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6.12), 공포 후 즉시 시행

한부모 (미혼모·부 포함) 가족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 (~'12년)월 5만원→('13년)월 7만원→('15년)월 10만원→('17년)월 12만원
 - * (~'16년) 자녀 연령 만 12세 미만 → ('17년) 만 13세 미만
 -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 ('10년)월 10만원→('11년)월 15만원→('17년)월 17만원
 - ③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 금지 및 교육의무
 -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6.12.2.) 공포 후 즉시 시행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2.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02-2100-6352,6349)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되어,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용가정은 정부지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였으나,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가정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에 국민행복카드 도입

- 추진배경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편의 증진
- 주요내용
 - ① 도입이유 :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발생 등 이용자 불편 개선,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도입
 - ② 서비스 신청절차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고, 그 중 1개 선택
 - * 연계된 후 본인부담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는 없으며,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 건의 본인부담금은 카드사에서 청구
 - ③ 신청인 :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 경우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 카드 발급 문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과 (☎ 02-2100-6147)

'17년부터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일정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하였으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17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인증 의무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입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정부·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6.3.22.)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추진배경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및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① 가족친화인증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수여
 - ② 의무화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 시행일 2017년 3월

4.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3)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됩니다.

-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훈련 과정*이 확대(25→40개 이상)됩니다.

*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직종 개발 등 다변화

- 아울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150→ 155개소) 됩니다.

|참고| 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 추진배경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주요내용 ①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25→40개이상)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150→155개소)
- 시행일 2017년 상반기

04 보건·사회복지

고용노동부 |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해양수산부 | 국가보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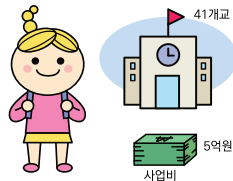
1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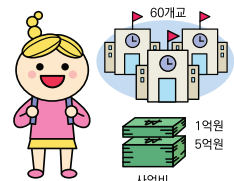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시행일 : 2017년 3월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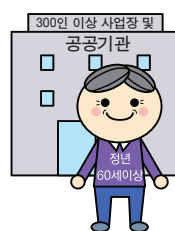
2

고용노동부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3

법무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시행일 : 2017년 2월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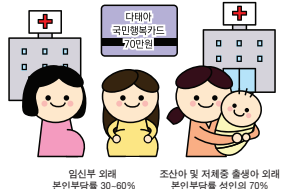
4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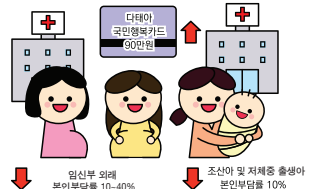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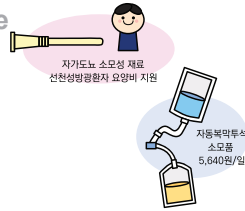
5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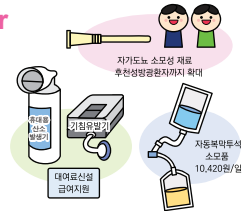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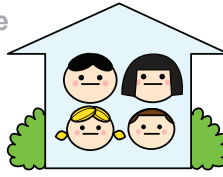
6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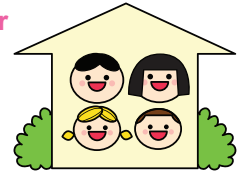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7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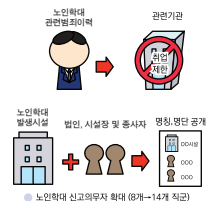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신 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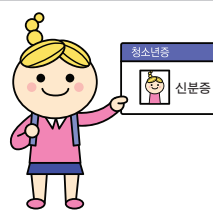
8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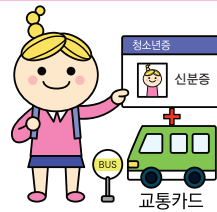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9

외교부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잠정,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

Before

신 설

After



10

해양수산부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 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시행일 : 2017년 7월 ~10월

Before



After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 하여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6년 41개교 → '17년 60개교로 확대

-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을 일원화 할 예정입니다.

* (대학청년고용센터) '16년 24개교 → '17년 14개교 (취업지원관) '16년 15개교 → '17년 6개교

- 또한, 사업비 5억 중 1억을 증액*하여, 학생 대상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비 증가분(1억)은 정부+대학 각 50% 매칭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추진배경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 주요내용
 - 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16년 41개교 → '17년 60개교)
 - ② 총 사업비 증액(대학당 5억원→6억원)
 - * 증가분(1억)은 정부+대학 각 50% 매칭하되, 대학별 학생 대상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지원
- 시행일 2017년 3월

2.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2017.1.1.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2017.1.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됩니다.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시행

-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이 미적용

-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알기쉬운 60세+ 정년제 30문30답” 자료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2017년도 정년 60세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장년층의 규모·비중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 시행
- 주요내용 ① 2017.1.1.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적용
②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2017년 1월

3. 최저임금 인상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 인상
- 주요내용 2017년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
* 일급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 1,352,230원(6,47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4. 단기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으로 통합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소기업탐방(1일 5시간 이상) 및 중소기업 취업
연수지원(2박3일)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5일 이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기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으로 통합

- 추진배경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강소기업탐방 및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으로 통합
② 5일 이내 중소·강소기업 체험을 통해 인식제고 및 인력미스매치 해소 지원
- 시행일 2017년 3월

5.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16년 하반기 시범추진 하였던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을 '17년 5천명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재학 중 직무체험 수요 및 지원요구를 수용하고,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 단, 공학계열 및 대학 최종학기 재학생은 참여제한

- 운영기관인 대학은, 전문대(3년제 포함)를 비롯하여 4년제 등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라면 모든 대학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7.3월부터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및 운영기관 관리비** 단가가 조정됩니다.

*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단가 조정(월 20~40만원 → 학생 1인당 월 7만원)

** 운영기관(대학·민간위탁기관) 관리비 단가 조정(월 3만원 → 월 1만원)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 **사업목표** 5천명을 목표로 '17년 본 사업 추진
- **참여대상** ① 학생 : 모든 대학재학생(단, 공학계열 및 대학 최종학기 재학생은 참여제한)
② 운영기관 : 전문대(3년제 포함), 4년제 등 모든 대학(단, 정부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한함)
- **지원금 단가 조정** ①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단가 조정(월 20~40만원 → 1인당 월 7만원)
② 운영기관 관리비 단가 조정(1인당 월 3만원 → 1인당 월 1만원)
- **시행일** 2017년 3월

6.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5)

'16년 하반기 시범추진 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17년 5만명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및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 본인적립 300만원 +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1,200만원+α(이자)

- 특히, '17년부터는 청년취업인턴제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I·II 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청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인턴 3만명, 취성패 1만7천명, 일학습병행 3천명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 **사업목표** 5만명을 목표로 '17년 본 사업 추진
- **참여대상**
 - ① 청년: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② 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내역**
 - ①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지원
 - ② (정부→기업)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지원(300만원 자산형성 기여)
* ('16년) 인턴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2년 390만원 지원(300만원 자산형성 기여)
- **시행일** 2017년 1월

7.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우선,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한정하였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하여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16년 1만명(공공서비스) → '17년 2만명(공공서비스) + α(사업주 제공과정)

- 한편, 관련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생애 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2017년도 생애설계서비스 확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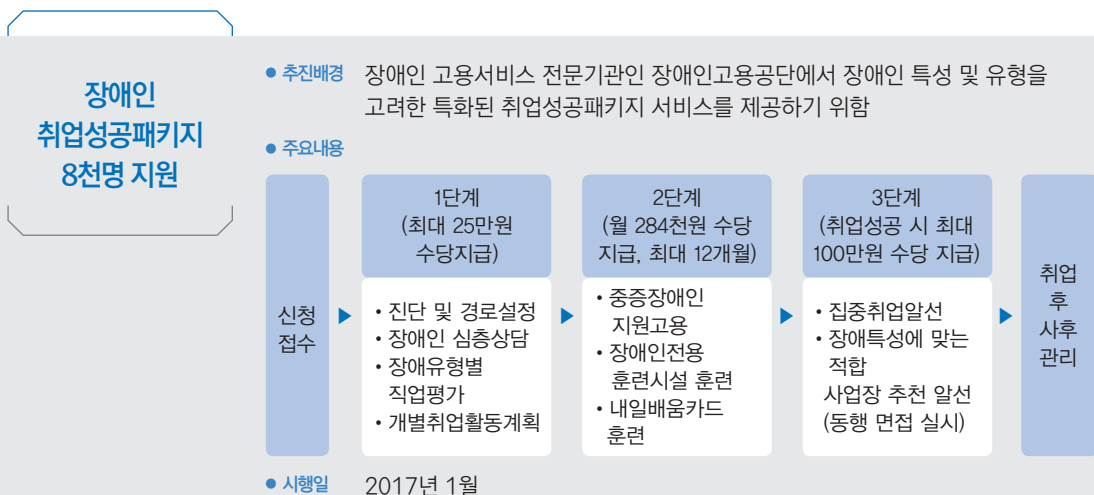
- **추진배경**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에 장기간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고용종합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설계서비스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① 장년이 생애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 받도록 지원
 - ② 생애설계 지원대상자 확대(현행: 재직자 → 개선: 재직자+구직자)
 - ③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현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주 제공과정)
- **시행일** 2017년 1월

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장애인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과 통합하여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 '17년 1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문상담원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인적자본이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하였으나, '17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 수당이 월 16~27만 원에서 31.6~4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훈련비용 현실화

- 추진배경 장애인 직업훈련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① 장애인훈련수당 인상
-('16년) 월 16~27만원 → ('17년) 월 31.6만원(취업성공패키지 40만원)
 - ②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 인상
-('16년) 3,750원 → ('17년) 6,511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단가 인상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물량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임금단가를 6,300원에서 6,52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가가 '17년부터 220원 인상(6,300원→6,520원)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응자·지원 규정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 주요내용 ①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를 6,300원에서 6,520원으로 인상
② 근로지원인 물량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 044-201-1559)

노후 및 슬레이트 주택 등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2017년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 등 주택 정비 시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기존 90%)까지 확대하여 100% 지원합니다.

[참고] 새마을 홈페이지(www.region.go.kr)>알림>가이드라인 및 지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위생·안전에 취약한 농어촌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 : 가구당 540만원(수급권자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 70%~50% 보조) → 700만원(수급권자와 차상위 100%, 일반가구 70%~50% 보조)
 - ② 집수리 지원 확대(가구당 700만원 기준) : 수급권자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 50% 보조 → 수급권자 및 차상위 100%, 일반가구 50% 보조
- 시행일 2017년 1월

2.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044-201-2341)

2017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제외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됩니다.

* 지원내용 : 학기중 및 방학중 우유(200ml/430원 이내)를 1년 250일 내외 지원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도모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 추진배경 저소득층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1)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이 기대됩니다.
- 또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여 제한능력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도모하였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에 맞추어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이 제한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민사소송법 검색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추진배경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 및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정비
- 주요내용
 -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확대
 - ②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 ③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 시행일 2017년 2월 4일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044-202-2745)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집니다.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

-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할 예정입니다.

* 종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의 70%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p 인하
②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044-202-2731)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

- 자가도뇨카테터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자가도뇨카테터 :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 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 1일 기준 9,000원(최대 6개)

-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자동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

* 기준액(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2017년도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 추진배경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 ②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 439만원에서 '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하며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이며, '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추진배경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 ① '17년 기준 중위소득 : '16년 대비 1.7% 인상
 - 4인가구 기준 ('16년)약 439만원 → ('17년)약 447만원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6년)29% → ('17년)30%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6년)약 127만원 → ('17년)약 134만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4.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044-202-3452)

'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 현재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신고할 수 있고,
 - 특별히, 의료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8개 직군*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인의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16년 12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장 등 6개 직군*도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6년 12월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집행종료·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 따라서,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 등을 신청 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 또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폐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 및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을 직접 폐쇄하거나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

-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도입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노인관련시설 취업 제한, 노인학대가 일어난 법인과 시설의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전 국민 노인학대 인식 개선
- 주요내용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 시행일 2016년 12월 30일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044-202-2515)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 *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 **주요내용** ①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
 ②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
 ③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 **시행일** 2017년 3월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복지차량 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 -

보건복지부 | 지역복지과 (☎ 044-202-3122, 3124)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의 복지 공무원의 기동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
- 주요내용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기능 강화
 -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② ('16년) 933개→('17년) 2,100개→('18년) 3,502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
- 시행일 2017년 1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044-202-3072)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기준 및 가입 기간 중 소득 유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가입 할 수 있었고

* 기준 중위소득50%(179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이하로 수급권자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50%의60%(107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

-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 기준 완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및 중도 해지 기준 완화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강화
* 가입 가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이자 수령
- **주요내용**
 - ① 통장 가입 가구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② 통장 가입 기간 중 유지하여야하는 소득 기준
-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 기준 중위소득의 70%
- **시행일** 2016년 10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②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③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 2017년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 주요내용
 - ①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완화
 - 적용 대상 : 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 (기존) 생업에 사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 → (변경) 기존 3가지 경우 외 2000cc미만 중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추가
 - ② 적용대상 사업 :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사업
- 시행일 2017년 1월

9. 전국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설치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17.1.1. 시행)하여, 중앙 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둔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계획

- 추진배경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종합 지원
- 주요내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및 지역(시·도별 17개소) 설치
 - 중앙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옹호기관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 지역옹호기관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개소일은 조정될 수 있음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전국 17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2개) 본격운영)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인지·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10천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1)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2)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운영

-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복지 등 지원 및 권리 보호
- 주요내용 ①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복지, 고용, 교육 등 서비스 맞춤형 제공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범죄 피해시 현장조사, 보호조치, 공공후견인 지원②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1)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 지금까지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대중교통·여가시설·문화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위한 증표로 이용되었으나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청소년증 기능 확대

- 추진배경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선택 가능(3개* 중 택일)
 -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 ② 대중교통 또는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
- 시행일 2017년 1월 11일

2.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6272)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2개에서 224개로, 가출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청소년쉼터**도 119개에서 123개로 확대됩니다.

*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발견,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탈선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66명에서 1,146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 (지역번호)1388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서비스 시설(일명 ‘청소년 회복센터’)을 법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보호처분(총 10종)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추진배경 지역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확대(222개→224개)
 - ② 청소년쉼터 확대(119개→123개)
 - ③ 청소년동반자 확대(1,066명→1,146명)
 - ④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2016.11.30. 시행)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 제공(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이상의 단독·연립주택 등)
- 시행일 2017년 상반기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운영

[여성가족부 | 복지지원과 (☎ 02-2100-642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하고,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 2개소(쉼터 1개소, 그룹홈 1개소)를 확대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16.7.1. 기준, 단위: 개소, 호)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임대주택 주거지원	276	10	42	20	18	20	22	28	24	10	11	-	10	-	10	42	9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8	7	1	2	1	1	1	1	3	1	1	1	2	2	2	1	1

- 또한 사이버 및 모바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17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 여성폭력사이버상담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소 : www.womenhotline.or.kr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생계비 : ('16년) 621백만원 → ('17년) 722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지원확대

- 추진배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 확대
- 주요내용
 - ①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276호→296호)
 -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28개소→30개소)
 - ③ 여성폭력사이버상담신고센터 운영
 - ④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지원확대(621백만원→722백만원)
- 시행일 2017년 1월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 복지지원과 (☎ 02-2100-642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가 3% 인상되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1인당 평균 월 37만 9천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암투병 및 임종 등을 앞둔 피해자에 대한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17년부터 지원합니다.

* 1인당 월평균 630만원(1일 21만원) 지원, 2명분 7,600만원(6개월) 반영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단가 인상〉

구분	'16년	'17년	증감현황
1인당 지원금(평균)	월 269.4만원	월 277.5만원	월 8.1만원 증액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만원	월 129.8만원	월 3.8만원 증액
- 간병비	월 105.5만원	월 108.7만원	월 3.2만원 증액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월 37.9만원 (연 454.3만원)	월 39만원 (연 467.9만원)	월 1.1만원 증액 (연 13.6만원 증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강화

- 추진배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향상
- 주요내용 ① 생활안정지원금(월 126만원→월 129.8만원) 및
② 간병비(월 105.5만원→월 108.7만원) 인상
③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 인상(월 37.9만원→월 39만원)
④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 외교부 | 여권과 (☎ 02-2002-0111)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되어, 중증시각 장애인들이 여권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증시각장애인이 전자비자 신청, 항공권, 숙소 등 예약에 필요한 여권정보(영문성명, 여권 번호 등)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으나, 점자여권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자여권 신규 발급

- 추진배경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
- 주요내용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 발급 개시
- 시행일 2017년 상반기(잠정,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

1.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044-200-5461)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하여 추진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됩니다.

*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의료환경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은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이 있어도 제때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지역별 어업안전보건 센터를 통하여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7~10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진료 과목) 혈압, 혈당측정, 무릎 관절염 진료상담 및 약물 처방 등

- '17년도에는 어업인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하여 한의학 진료(침, 뜸 등)도 추가하게 됩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추진배경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한의학 진료 추가 추진
- 주요내용 ① 의료서비스 지역 확대('16년 5개소 ⇒ '17년 10개소)
②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 시행일 2017년 7~10월

2.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장 강화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044-200-5745)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장을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이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17년 1월 18일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MLC) 201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환비용 및 수당과 식료품, 식수, 연료 등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을 보장하는 유기보험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 선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국제협약(국제노동기구)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비준

- 선원임금채권 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는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 및 재해보상 보험사업자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보험사업자의 보험 중도해지가 제한되고 보험가입, 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하는 등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앞으로도 선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원의 유기· 사망 및 부상에 관한 선원법 일부개정안

- 추진배경 선원의 유기·사망 및 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증 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보
- 주요내용 ① 유기구제보험 신설 및 가입의무 부과,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 확대
② 보험급여 직접청구권 보장 및 보험중도해지 제한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

1.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 국가보훈처 | 창조행정담당관 (☎ 044-202-5236)

경기동부지역(용인)과 충남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하여 보훈행정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 동안 24개(5개 지방청, 19개 지청)로 운영되어 온 지방보훈관서 체계를 26개(5개 지방청, 21개 지청)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관할할 예정이며,
-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열린마당>보훈처 소식>팝업게시판

지청신설 추진 계획

- 추진배경 '17년 1분기 소요정원 배정 확정(행정자치부, '16. 9.7.)
- 주요내용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지역에 지청 신설
 - 1단계 : ('17. 2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 2단계 : ('17. 4월) 경기동부보훈지청 및 충남동부보훈지청 개정
- 시행일 2017년 1분기

05 공공안전 및 질서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 관세청 | 기상청 | 공정거래위원회

1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 · 표시
기준 강화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신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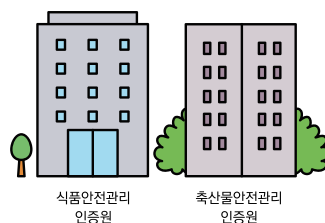
2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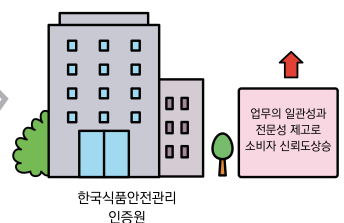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시행일 : 2017년 2월

Before



After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시행일 : 2017년 5월

Before

신설

After



4

국민안전처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After



5

국민안전처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6

국민안전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1.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과 (☎ 044-203-2830)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기구(기)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지만,
 -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유기사설·기구에 대해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의무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종 유기사설·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6.11.22.~12.2.)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

- 추진배경 유원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① 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기구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
 - ②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 의무화
 - ③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예정)

여성가족부

1.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 02-2100-6385/6386) / 권익지원과 (☎ 02-2100-6394)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16년) 37개소 → ('17년) 38개소

또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확대 보급됩니다.

*('16년) 3,600여개 → ('17년) 4,600여개

성매매피해자에게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됩니다.

● 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년) 11개소 → ('17년) 12개소

<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17.1월 기준)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1	1	1	1	1	1	-	3	-	-	-	1	1	-	-	1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확대

- 추진배경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지원 내실화
- 주요내용 ① 해바라기센터 확충(37개소→38개소)
②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급 확대(3,600여개→4,600여개)
③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1개소→12개소)
- 시행일 2017년 1월

2. 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42)

공공기관 등(유치원·어린이집 포함 68,000여개)의 성폭력 예방조치와가 의무화됩니다.

- 공공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만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등 성폭력 예방조치도 추가로 시행하며,

또한,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도 의무화됩니다.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이 성폭력 예방조치 등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기대돼’(‘16.11.15)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추진배경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노력을 통한 국민불안감 해소 필요
- 주요내용
 - ①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 ②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추진과제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 수중레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안전한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과 (☎ 044-200-5257)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를 통한 활성화와 건전한 수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수중레저법이 '17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수중레저사업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유사한 유도선업으로 창업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으나, 수중레저법 상의 수중레저사업 신설로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수중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중레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한 수중레저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도,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경제적 부가가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추진배경**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중레저법 제정
- **주요내용** ① 수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정부종합계획 수립, 활성화 지원 추진
② 수중레저체험사업, 수중레저교육사업 및 운송업 등 신설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 환경부 | 공원생태과 (☎ 044-201-7312)

지역경제 활성화와 탐방객 및 지역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해당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해안·섬지역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탐방객 편의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현행법령>자연공원법(제18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 **추진배경** 지역 주민·탐방객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적 가설건축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허용
② 자연환경지구(해안·섬지역) 내 탐방객 편의시설 한시적 허용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2.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 환경부 |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66)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를 제조·수입할 경우,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냉매판매량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판매량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2016년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수입하였을 경우, 냉매의 종류, 판매량,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2017년 1월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http://www.ri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조·수입한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물질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냉매판매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추진계획

- 추진배경 기후변화 영향이 큰 냉매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냉매판매량 현황 파악
- 주요내용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044-201-7177)

오염토양 정화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처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반출정화를 허용토록 되어 있었고, 부지면적의 개념이 불명확하였습니다.
- 2017년부터는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 또한,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적용토록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추진배경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 관련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
- 주요내용
 - ①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 완화(200제곱미터 미만 → 300제곱미터 미만)
 -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
 - ②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의 면적으로 개념 명확화
- 시행일 2017년 1월

4.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환경부 | 화학제품TF팀 (☎ 044-201-6825)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全)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CMIT/MIT*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금지

*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고시개정안 확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 추진배경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 주요내용 ①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② 안전·표시기준 강화(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금지, 표시사항 추가)
- 시행일 2016년 12월(잠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54)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그동안 분리·운영되어 온 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기관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7.2.4 시행)

- 이에 따라 HACCP 인증신청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통합 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 또한,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 추진배경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계획
- 주요내용
 - ① 통합 인증원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② 통합 인증원의 업무
 - HACCP 적용업소 등의 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사업
 -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통계 및 이력 관리 등
- 시행일 2017년 2월 4일

2.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3)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시행합니다.
- '17년 5월부터 자율 신청 음식점 6,000개소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는 매출액 향상,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은 물론 식중독 사전 예방에 따른 경제적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추진배경**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필요
- **주요내용**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개정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등급 공표 등 실시
- **시행일** 2017년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진료비’ 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043-719-2705)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종전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14년 12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17년에는 보상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시행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 ('15년)사망 → ('16년)사망, 장애, 장례비 → ('17년)사망, 장애, 장례비, 진료비
-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제약업체의 출연재원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국민 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면 확대

- 추진배경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상범위 전면 확대
- 주요내용 의약품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국민안전처

1.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 안전제도과 (☎ 044-205-4149)

국민안전처에서는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의무화하여 유선 및 도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훈련 유형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기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구분	훈련내용	주기
1. 선내숙지 훈련	가.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 위치, 승객 유도 다.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 및 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 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매월
2. 퇴선 훈련	가.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나.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	매월
3. 기름유출대응, 소화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기름유출시 대응장비 사용법, 라. 소화기 등 소화장비 사용법	매월
4.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및 장비활용 구조	6개월
5.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침수시 대응 장비사용법	6개월

- 또한, 유·도선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연간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을 사망 1인당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내용

- 추진배경 유·도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기별(매월, 6개월)로 실시
 - ② 사업자·선원 등의 교육시간을 연간 4시간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
 - ③ 유·도선 사고발생시 보상기준을 사망 1인당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의무화
- 시행일 2016년 7월 19일

2.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국민안전처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044-205-4382)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는 2017년 1월 28일부터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 상영관 등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건물내에 전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공포(2016.1.27.) 및 시행(2017.1.28.)

- 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 추진배경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의 의무 지정
 -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시간 내에 민방위경보발령 시 건물내 전파
 - ② 관리주체는 전용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통해 전광방송등을 이용 건물내 전파
 - ※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19.12.31) 유예하고, 설치전까지는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이동전화로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할 예정임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3.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국민안전처 | 승강기안전과 (☎ 044-205-4294)

국민안전처에서는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그 동안 설치 이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승강기에 갇힘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기술자가 구조할 때까지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내용

- 추진배경 장기사용 승강기 및 갇힘 사고 증가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정기화(1회→3년 마다)
 - ②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 의무
 - ③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 의무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국민안전처 | 재난보험과 (☎ 044-205-5353)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으로 시설의 관리·점유·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이용객은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관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내용

- **대상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 **보상하는 손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 **타 의무보험과의 관계** 화재보험법상 신배책부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면제
- **시행일** 신규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1.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재지정

| 관세청 | 통관기획과 (☎ 042-481-7815)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16년도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재지정 여부와 신규품목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재지정 품목(13개) 및 지정종료 품목
 - (재지정)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장명태, 냉동콩치
 - (지정종료) 냉동명태*
- * 국산이 전무하여 관리실익 없음

재지정 기간	재지정 기간
'17.2.1.~'19.7.31.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17.3.1.~'20.7.31.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동콩치
'17.2.1.~'20.7.31.	냉장명태
지 정 종 료	냉동명태

- 신규지정 품목(7개) <지정기간: 2017.2.1~2019.7.31>
 -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 ※ 지정기간(재지정 포함)은 유통이력신고건수, 신고업체수, 수입신고건수를 고려하여 결정

|참고| 관세법령정보포털 3.0>법령>행정규칙>「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재지정

- 추진배경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신규품목 추가지정
- 주요내용 13개 품목 재지정(다만, 냉동명태 지정종료), 7개 품목 추가
- 시행일 2017년 2월 1일

1.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

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3)

지진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지진관측·통보 기관인 기상청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송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그간 지진발생시, 지진 긴급재난문자(CBS)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발송되어 왔으나,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7년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 부터는 지진발생시 국민들에게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정보전달 시간을 최소화 합니다.

* 지진관측·통보 → CBS 자동입력 및 발송(1~3분 이내 대국민 수신)

지진 통보 개선사항

- 추진배경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지진재해 경감 및 국민불안감 해소
- 주요내용 신속한 지진통보를 위한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구축
- 시행일 시스템 구축(2017년 상반기),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2017년 하반기)
※ 지진발생시 대상지역에 위치한 핸드폰으로 자동 발송

2.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항공기상청 | 항행기상팀 ☎ 032-740-2812

소형항공기와 헬기 등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합니다.

- 저고도 항공기 운항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상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가능한 많은 저고도 기상관측자료를 지원하는 것이 안전항행에 매우 중요해, 항공기상청은 육군과의 협의를 거쳐 군 기상관측자료 150곳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 또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기관 2,600개의 CCTV 영상을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포털을 통해 함께 제공합니다.

[\[참고\]](#)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 저고도 > 저고도 기상감시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 **추진배경** 저고도 기상관측자료의 확대 제공을 통한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 제고
- **주요내용** ① 군 관측자료 확대제공(27소 → 177소)
② 유관기관의 CCTV 영상 제공(4개 기관 2,600여개)
- **시행일** CCTV 영상 제공(2017년 1월), 군 관측자료 확대제공(2017년 3월)
※ 군 관측자료의 경우 2016년 12월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3월 제공 예정

3.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활용하기

| 기상청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 02-2181-0863)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 낙뢰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의 낙뢰정보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 낙뢰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어 낙뢰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우리동네 낙뢰정보」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에 낙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능동적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위치설정: 전국 도로명·지번, 공항,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으로 검색
 - 관심반경 설정: 10 km 단위로 100 km까지 관심반경 설정
- 「우리동네 낙뢰정보」서비스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go.kr>)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정보 > 우리동네 낙뢰정보

2017년도 낙뢰정보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제공
- 주요내용 위치기반 낙뢰정보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17년 6월

1.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거래과 (☎ 044-200-4466)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2월 23일부터 소비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소량의 위해성분 등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화장품 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추진배경** 온라인 판매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주요내용** 화장품, 어린이제품의 온라인 판매시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정보제공 의무화
- **시행일** 2017년 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2.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 제조업감시과 (☎ 044-200-4517)

기존에 대리점 거래를 규율하던 공정거래법보다 대리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밀어내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은 본사(공급업자)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물품 등을 밀어내기 하는 경우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것 외에 해당 물품 가액만큼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 대리점거래를 하고 있는 본사들은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잘 준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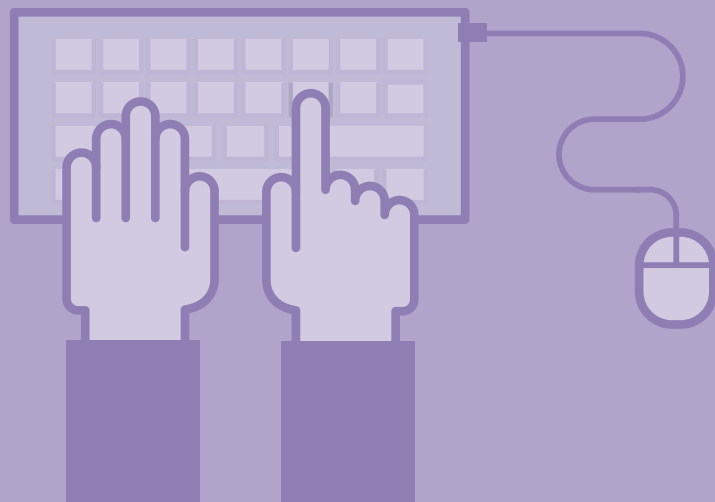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 개선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서면발급 의무, 구입강제금지,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금지, 판매목표 강요 금지 등 8개 의무
- 시행일 2016년 12월 23일

06 국방·병무

국방부 | 방위사업청 | 병무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국방부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시행일 : 2017년 5월

Before

신설

Af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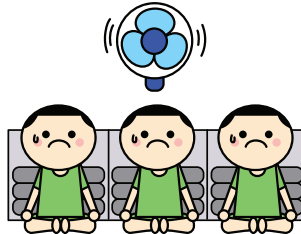
국방부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
훈련장 에어컨 설치

시행일 : 2017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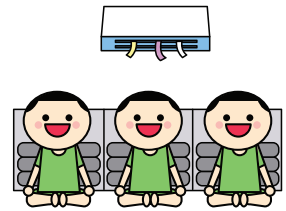
Before

에어컨 설치율 45%



After

에어컨 설치율 100%



3

방위사업청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After



4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1.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제2연평해전 등의 ‘전투경력’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한주호 준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의 영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평소 ‘전투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근무기간과 훈·표창 기록 등으로 경력을 확인하여 왔으며, 타의 귀감이 되는 경력은 기록할 방법이 없어 전역 후에 관련 기록 확인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올해 1월 1일 부터는 경력표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된 ‘경력 심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각 군 본부로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기될 예정입니다.
- 또한, 자신의 군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 시 경력증명서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신청서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 **추진배경**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에 대한 영예 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 경력표기 희망 시 심의신청서를 각 군 본부로 제출
 - 각 군 본부 경력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및 표기
 - ② 자신의 군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시 경력증명서 지급 추진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05)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부터는 시험과목 중 기존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 인정기준은 군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의 경우 평가등급 2급 이상, 군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의 경우 평가등급 3급 이상, 군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의 경우 평가등급 4급 이상으로 하며, 인정 유효기간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후 3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 방부 홈페이지 > 미디어 > 알림 > 공지사향 >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한국사 시험방식의 변경

- 추진배경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필기시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군무원 5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군무원 7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군무원 9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16.11.22공포)

3.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 국방부 | 국방여성정책과 (☎ 02-748-5173)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하고,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중인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육아휴직 신청 시 여군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현 조항을 개선하여, 남군과 여군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군인사법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관련 군인사법 개정)

- 추진배경 군인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① 남군의 육아휴직기간 확대(자녀 1명 당 1년→3년)
 - ②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③ 육아휴직 필수 허가대상 확대(여군→모든 군인)
- 시행일(군인사법) 2016년 12월말 공포 예정(개정안 국회 통과)
* 국무회의 상정(12.13.)

4. 중기 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전직지원기간(1~3개월) 부여

국방부 | 보건복지관실 전직지원정책과 ☎ 02-748-663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만 부여되던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은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자로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 복무자가 해당됩니다.

*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장 교	육 사	3 사	학 군	학 사	간 부	간 호	부사관	비 고
10년	6년	2년4개월	3년	3년	6년	4년		군장학금 또는 교육수혜 기간은 가산

- 전직지원 교육 부여기간은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복무 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전직 교육 부여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뉴스 속으로>보도자료

2017년도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교육 기간 부여 확대

- 추진배경 연금 비대상·가족부양 등 경제적 부담으로 누구보다 취업이 절실한 반면 취업준비 여건이 매우 취약함
- 주요내용 전직지원교육기간 부여 : 5년 이상~7년 미만은 1개월 / 7년 이상~9년 미만은 2개월 / 9년 이상~10년 미만은 3개월
*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자 해당(군장학금 또는 교육수혜 기간은 가산)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시행

5.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국방부 | 보건정책과 (☎ 02-748-6652)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전문의무병 제도는 그간 문제되었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여 장병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의료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전문 의무병으로 입대함으로써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환자 간호, 의약품 조제, 병리검사 등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면허·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별도 모집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서 재학생들이 면허·자격을 취득한 후 입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면허·자격자라 하더라도 전공과 관계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문의무병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면허·자격을 취득하고 입대하여 전문의료인으로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의무병 모집 계획

- **주요내용**
 - ① 모집분야 :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 ② 지원자격
 - 1순위 :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 2순위 :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
 - ③ 모집절차 : 병무청에서 모집 공고 ⇒ 지원 ⇒ 선발 ⇒ 입영
 - ④ 근무부대 : 군병원, 사단급 의무부대
- **시행일**
 - 2017년 5월
 - ※ 2~4월 모집·선발, 5월부터 매월 입영(예정)

6. 병 봉급 인상 9.6% 인상 (병장 기준/197,000원 → 216,000원)

국방부 |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는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하여,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 5천원(상병 기준)을 지급하게 됩니다.(계급별 인상액은 하단 표 참조)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 봉급 인상 (2016년 대비 9.6% 인상)

- 추진배경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 (2012년 대비 2배로 인상)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012년	108,000원	97,500원	88,200원	81,500원
2016년	197,000원	178,000원	161,000원	148,800원
2017년	216,000원	195,000원	176,400원	163,000원

- 시행일 2017년 1월

7.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 국방부 | 물자관리과 (☎ 02-748-5724)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피복류 신규 보급 및 보급기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하계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하계전투복을 '17년부터 1인당 2벌(사계절 2벌 포함 총 4벌)씩 확대 지급할 예정이며,
- 만족도 조사 결과,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를 신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장병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복류 보급 개선

-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 생활여건 개선
- 주요내용 ① 병사 하계전투복 1벌 → 2벌로 확대 지급
② 드로즈형 팬티, 동계생활모, 출타용 가방 신규 보급
- 시행일 2017년

드로즈형 팬티	동계생활모	출타용 가방
		

8. 쏘 병영생활관 및 쏘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 국방부 | 물자관리과/예비전력과 (☎ 02-748-5729/5244)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7년까지 모든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매년 여름철마다 불볕더위로 고생하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 및 동원훈련장 약 9백여 실에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년 상반기까지 에어컨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장병들(동원예비군 포함)이 보다 시원한 여름철을 보내게 됨으로써 전투력이 상승하고 복무 의욕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도
쏘 병영생활관
(동원훈련장 포함)
에어컨 설치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

- 추진배경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
- 주요내용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 에어컨 설치 보급
* 기존 에어컨 설치율 : 약 45% (100%로 확대 설치)
- 시행일 2017년 상반기

9.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항공권 지원

| 국방부 | 국제군수협력과 (☎ 02-748-5759)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 즉 정기휴가 외의 휴가를 갈 때 항공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제주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월부터는 항공권을 지원하여 제주 - 내륙 구간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권을 지원하여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귀향 및 부대 복귀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공지사항>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항공권 지원 [예정]

2017년도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권 지원

- **추진배경**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휴가 시 귀향 및 귀대 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이용 가능한 왕복 항공권을 연간 2회씩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부터

10.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국방부 | 예비전력과 ☎ 02-748-5245

예비군(병) 5~6년차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 임무에 전념토록 편성 및 훈련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실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5~6년차 예비군을 온전히 향방예비군에 편성함으로써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의 확립이 기대됩니다.

[\[참고\]](#) 국방부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예비군훈련제도·방침변경사항

**예비군(병)
5~6년차
동원훈련을
제외하고
향방예비군으로만
편성**

- **추진배경**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에 따른 향방예비군 부족현상 발생, 향방예비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
- **주요내용** 5~6년차(병) 예비군 동원미지정으로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하여 실시
* 5~6년차(병) 동원지정자 훈련 : 향방기본(8시간), 향방작계(6시간), 소집점검(4시간)→향방기본(8시간), 1차향방작계(6시간), 2차향방작계(6시간)
- **시행일** 2017년 3월 2일

11. 예비군 휴업보상금 지급제도 개선으로 권익보장

국방부 | 예비전력과 (☎ 02-748-5238)

예비군 휴업보상금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지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예비군 휴업보상금은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비군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 휴업 보상금 산정기준 변경

- 추진배경 휴업보상금 산정기준 현실 반영 필요
- 주요내용 산정기준 변경 : (도시가계비 + 농가가계비) 평균의 100분의 70
⇒ 가계지출비 월평균의 100분의 80으로 증가
- 시행일 2017년 3월 1일 (예비군법 시행령, '16.11.30. 개정)

12. 병무행정 용어 정비

국방부 | 인력정책과 (☎ 02-748-5130)

병무행정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무행정 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 병무행정 용어 정비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등을 자문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개정된 병무행정 용어 중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였습니다.

병무행정 용어 정비 세부사항

- 추진배경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1국민역	병역준비역	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제2국민역	전시근로역	징병검사	병역판정검사
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재징병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	군간부후보생	병사용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소양교육	복무기본교육	보수교육	복무지도교육
신상이동	신상변동	징병관	병역판정관
신체등위	신체등급	징병보좌관	병역판정보좌관
의무종사	의무복무	징병검사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직원
입영기일연기	입영일자 연기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1.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 방위사업청 |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99)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의무화를 통해 국외도입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이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통해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가격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국방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방위사업법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62조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 무역대리업자를 통한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 발생
 - 국외조달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절한 수준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 국외도입 사업에 참여하는 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및 벌칙 부과 등 제재 조치
- **시행일** 2017년 6월 예정

2.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 방위사업청 |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99)

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확대하였습니다.

- 군수품 가격결정을 위해 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발생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배에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대폭 가중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원가관리를 통해 국방 예산이 합법적이며 경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방위사업법 제58조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 **추진배경** ·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국방예산의 합법적 집행 곤란
·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위법한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부과될 수 있는 제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발생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2배로 증액하여 제재 강화
- **시행일** 2016년 12월

3.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방위사업청 |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94)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노력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방산원가 이윤제도상 경영노력보상 항목은 연구개발, 수출확대, 인증취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기업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영노력 평가기준을 일반 중소기업 평균수준으로 완화(Level 4→Level 3)하여 현실화하고,
 - 중소기업의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를 50% 가산 적용하여 품질향상 등 경영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보상 이윤을 강화(기본보상 조정계수 0.2→0.3) 하였습니다.

[참고] 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① 경영노력보상 평가기준 재정립
 - 생산성경영노력 보상기준 완화(최소점수 부여기준 Level 4→Level 3)
 -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 50% 가산
 - ② 기본보상 조정계수 상향조정 (0.2→0.3)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4.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 방위사업청 |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99)

국외도입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등록·승인된 무역대리업체만 방위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 이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등록취소 사유와 범죄사실 등의 조회를 통하여 건전성이 보장된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57조의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8조의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 **추진배경** · 무역대리업자를 통한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 발생
· 국외조달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전한 무역대리업자를 식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주요내용** ·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활용하는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및 벌칙 부과 등 제재 조치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5.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 방위사업청 |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87)

정부예산의 사고이월 최소화 및 업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산유보금을 채권확보 후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납품 후 원가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확정될 때 까지 정산유보금 (계약금액의 10%이내)을 설정하고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 '16년 12월부터는 원가정산 이전에도 채권 보전서류(보증서 또는 보험증권)를 제출 받고 정산유보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금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채권확보시 정산유보금 지급제도

- 추진배경 정부 예산집행 및 업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확보 시 정산유보금 지급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① 대상 :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 ② 개선대상 : 방위사업청 청 예규 계약특수조건 표준
 - ③ 개선내용 : 채권 보전서류 제출 시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이내) 지급
 - 채권 보전서류 :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한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보증기간 : 청구일 기준 12개월 이상)
- 시행일 2016년 12월 8일

6. 방산원가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방산업체 이윤 제도 개선

| 방위사업청 | 원가총괄팀 (☎ 02-2079-4277/421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 및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 취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한 이윤을 환수하였으나,
- 인증제도 도입 취지 및 업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가와 관련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인증을 취소하고 이윤을 소급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인증 취소 사유 중 ERP시스템 구축요건 일부 미충족, 독촉 기간 내 원가자료 미제출,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소하고 이윤을 환수 해오던 것을,
- 취소 사유가 경미하거나 인증업체가 알지 못한 하수급업체의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증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관련법규>법령>행정규칙>인증제도운영지침

방산원가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방산업체 이윤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방산업체가 경미한 사안 및 업체가 알기 어려운 하수급 업체의원가부정시 인증을 취소 및 이윤 환수에 따른 업체에 과도한 부담
- 주요내용 ① 원가와 무관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인증취소/이윤환수 조항 삭제
② ERP 시스템 구축요건중 1가지 미충족(인증취소→인증정지 2개월, 재평가)
③ 독촉 기한까지 원가자료 미제출(인증취소→인증정지 3개월)
④ 하수급업체가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 등(인증취소→인증정지 6개월)
- 시행일 2016년 10월 12일

1.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시 결핵검사 신설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와 (☎ 042-481-2968)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병률이 높아 이를 예방하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 2016. 11. 30. 병무행정 용어변경 :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 잠복 결핵검사는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합니다.
- 또한 입영하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한 치료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 시행

- 추진배경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로 군부대 내 결핵 발병 예방 및 전염 차단
- 주요내용 ① (대상 인원) 연간 약 34만 3천명 / (소요 예산) 137억원
②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 실시(채혈 후 위탁기관 검사 의뢰)
- 시행일 2017년 1월

병무청

2.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귀가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부대에 머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 병무청 |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지금까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병역의무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제도 시행일('16.11.30) 이후 입영하여 귀가 조치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귀가조치 전에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입영부대 신체검사 귀가자의 재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 추진배경 귀가 전 재영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의무자 편익 증대
- 주요내용 ① 여러 번 귀가한 경우 매 귀가 시마다 재영한 기간의 합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
②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되어도 변경 전 귀가자가 부대에 머문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입영대상자부터

3.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 병무청 | 현역입영과 (☎ 042-481-2716)

그동안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이 「다음연도 재학생입영원」과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어, 입영 신청 방법과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 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합니다.
- 앞으로 현역병 입영 신청은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 **추진배경** 입영신청 방법 통합, 일원화로 혼선방지 및 민원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당해연도 ‘일자’ 단위, 다음연도 ‘월’ 단위로 입영신청경로 단순화
② 현역병 입영신청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
- **시행일** 2017년 3월1일 신청자부터
예시) 2017년도 현역병 입영 신청
- 2017년도 입영을 원할 경우 “입영일자” 선택(2017-04-11)
- 2018년도 입영을 원할 경우 “입영월” 선택(2018년 4월)

4.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헌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

| 병무청 | 현역모집과 (☎ 042-481-2720)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이 1차 합격 시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과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됩니다.

- 그 동안 모집병 지원자는 헌혈과 봉사실적을 가산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 처리합니다.
- 또한, 모집병 지원자가 보건복지부의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나, DOVOL(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신청만 하면 그 실적도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모병)안내 > 공지사항

각 군 모집병 지원자 헌혈, 봉사실적 가산점 서류제출 폐지

- 추진배경 부처 간 협업으로 모집병 지원자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주요내용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헌혈, 봉사실적) 서류를 행자부 1365와 연계로 직접 확인 및 처리
- 시행일 2017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07 일반공공행정

교육부 | 국토교통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외교부 | 해양수산부
환경부 | 인사혁신처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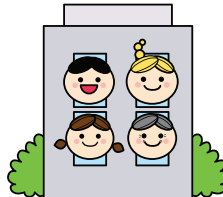
1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재계약 기준 개선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After



2

법무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3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시행일 : 2017년 5월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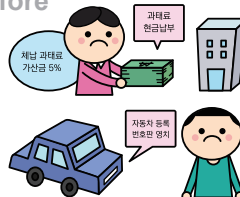
4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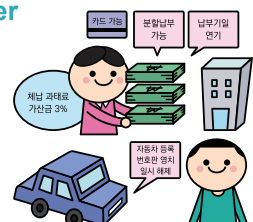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시행일 : 2017년 6월

Before



After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5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시행일 : 2017년 3월

Before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시
사전지문 등록 필수

After



주민등록증 발급 받은 국민,
사전지문 등록 절차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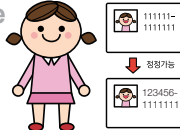
6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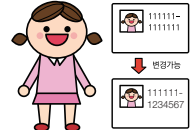
시행일 : 2017년 5월

Before



●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After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장·신체, 재산, 신용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7

외교부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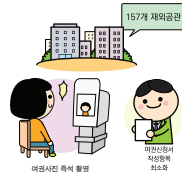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여권신청 목적 설명
여권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After



여권신청 목적 설명
여권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8

환경부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시행일 : 2017년 6월

Before

신 설

After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 초기 입주기업(1~3년) 임대료·사무료 감면(50~100%)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150~200만 원)

9

환경부

빈병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
(150% 이상 확대, 붉은색 등)

1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 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신 설

After



비코드만 찍으면
바로 확인
가능하지

11

공정거래위원회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시행일 : 2016년 11월

Before

신 설

After



브랜드별 창업비용 비교
카페 O 145,111원
OOO카페 231,313원
OOOO카페 171,253원

1.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교육부 | 민원조사담당관 (☎ 044-203-6431)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의 민원 종류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16.11.29. 시행

- 팩스민원 종류를 기존 졸업증명 등 25종에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인적 사항) 정정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등 2종을 추가하여 27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존 중등과정에만 적용하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초등과정에서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민원인이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교육민원서비스 이용
- 주요내용 ① 팩스민원 2종 추가(25종 → 27종)
② 팩스민원 범위 확대(1종)
- 시행일 2016년 11월 29일

1.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044-201-3402)

토지·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하거나,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하도록 하여, 다운계약, 업계약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분양계약 등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최초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까지 확대
- 시행일 2017년 1월 20일

2.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044-201-3402)

부동산 거래를 허위신고한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받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다운계약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과태료의 50%를 감경받게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추진배경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을 통한 자발적 신고·시정 유도
-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①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전액 면제, 조사 개시 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50% 감경
- 시행일 2017년 1월 20일

3.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044-201-3402)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당사자간 은밀한 거래(현금거래 및 이중계약 등)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므로,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추진배경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17년 기준중위소득('16년 대비 1.7%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16년 보다 2.54%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

- 추진배경 주거급여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6년 대비 1.7%상승
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2016년 대비 2.54%상승
- 시행일 2017년 1월1일

5.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4740), 공공주택정책과 (☎ 044-201-4580), 행복주택기획과 (☎ 044-201-4522)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이 일부 조정됩니다.
 -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기준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 종전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됩니다.

- 현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됩니다.
-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기준 정비

- 추진배경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의 선순환구조 마련
- 주요내용
 - ① 입주기준(소득·자산) 마련
 - 소득불문자에 대한 소득기준 신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소득기준 일부 조정
 -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 및 기타자산까지 포함 및 자동차 별도 관리
 - ② 재계약기준(소득·자산) 마련
 -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기준 총족
- 시행일 입주기준(2016년 12월 30일), 재계약기준(2017년 6월 30일)

1.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99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를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17. 1. 7.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하여야 했으나, 2017. 1. 7.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대 3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잠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완료).
 - 다만,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검색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 도입(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②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 도입(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시행일 2017년 1월 7일(동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3)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17. 5. 30. 시행).

-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분쟁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 주요내용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②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의 집행력 부여 등 규정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3.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3)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과태료 납부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시행됩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과태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

- 추진배경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
 - ②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 완화(5% → 3%)
 - ③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규정
 - ④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도입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4.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법무부 | 출입국심사과 (☎02-2110-4045), 이민정보과 (☎ 02-2110-4096)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범 운영하고, 2017년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 **추진배경**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민 불편사항 해소
- **주요내용** ① 경찰청 보유 국민의 지문 정보 연계
②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 **시행일** 2017년 3월(잠정 시스템 구축 중)*
※ 시스템 구축 완료(2016년 12월), 시험운영(2017년 1월 ~ 2월)

5.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법무부 | 출입국심사와 (☎02-2110-4045), 이민정보과 (☎ 02-2110-4096)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테러범,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국내 입국은 차단할 수 있었으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는 없어 국민의 안전이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항공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항공사 및 시범운영공항을 확대하고, 2017년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사전확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국민과 항공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참고자료(160212) /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160313)>항공사 탑승방지의무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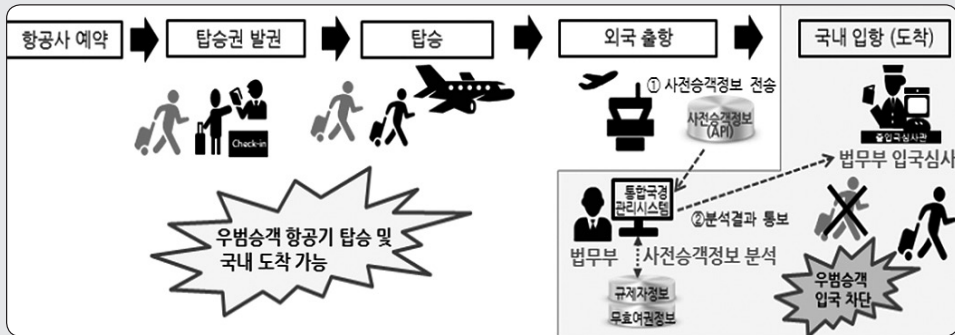
- **추진배경**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①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정보를 미리 받아 확인 후 우범승객은 탑승불가 통보
② 운수업자는 탑승불가된 승객에 대하여 탑승권 발권 차단 등 탑승 방지
- **시행일** 2017년 4월(잠정, 시스템 구축 중)*
※ 시스템 구축 완료(2016년 12월), 시험운영(2017년 1월 ~ 3월)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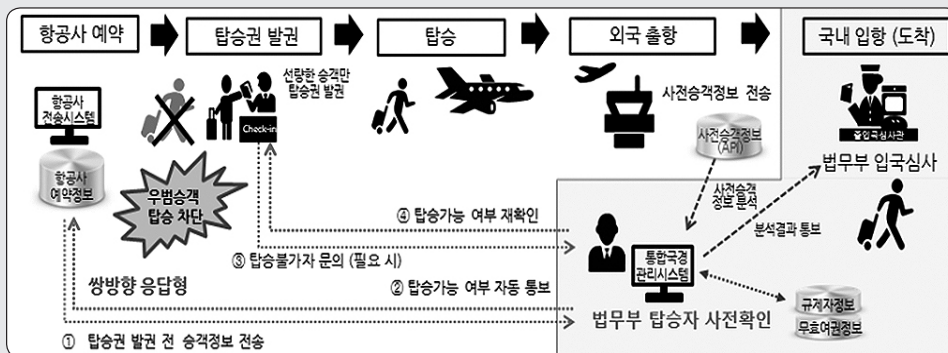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법무부 | 이민정보과 (☎ 02-2110-4096)

- 기존 시스템은 테러범, 분실여권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국내 입국은 차단가능하나, 항공기 탑승 및 국내 도착까지는 방지할 수 없어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



-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사전확인 후 입국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항공사에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탑승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 안전 확보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행정자치부 | 변경제도 추진단 (☎ 02-2100-3838)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자치부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추진배경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변경 적합 여부 결정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2.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 행정자치부 |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7)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을 가까운 시·군·구 전국 어디서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서민들의 신속한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원거리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지난 2016년 12월 22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 신청·접수와 신청 시·군·구에서 자격·면허증의 팩스사본 수령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7년 5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자격·면허증 원본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급에 대해서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즉시 발급서비스도 시행 됩니다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계획

- 추진배경 전국 어디서나 생활자격·면허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개선하여 취업·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생활자격·면허증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받도록 개선
 - (현행)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 (개선)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교부 및 재발급은 온라인 즉시발급 가능
 - ※ 개선대상 자격·면허(8종) :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족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온라인 발급만 개선·시행)
- 시행일 2017년 5월
(※ '16.12.22~'17.4월까지는 자격·면허증 팩스사본 수령만 가능)

3.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 이용한 신분확인 등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행정자치부 | 주민과 ☎ 02-2100-3837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등록 방법 개선,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 개선 등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17.1.1.시행)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지문등록 방법이 개선되고,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 등록하던 불편이 앞으로는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 포함)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에 해당하여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로 인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입증서류가 현재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고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하여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 이용한 신분확인 등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가 거주불명으로 처리되는 불편 해소, 잉크 이용 지문등록에 따른 신체접촉 등 민원 해결, 국민이 자주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
- 주요내용
 -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 진행단계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 ② 읍·면·동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할 때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 ③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 등록 가능
 - ④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에서 제외되는 근거 마련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 외교부 | 여권과 ☎ 02-2002-0179

해외에서 여권신청 시 사진촬영부터 서류제출까지 한 번에 재외공관에서 해결하는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더 많은 재외공관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여권사진 촬영과 간이서식 사용을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월 2일부터 15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증명사진 촬영 환경이 열악한 해외의 재외공관에 디지털 여권사진촬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여권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재외공관에서 무료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처간 개인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출 서류를 줄이고 종이 여권신청서의 작성항목을 최소화하여 더욱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여권신청제 확대 시행 계획

- 추진배경 더 많은 재외공관에서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디지털 여권사진촬영시스템 구축(84개→157개 재외공관)
② 제출서류 및 종이 여권신청서 작성항목 최소화(84개→157개 재외공관)
- 시행일 2017년 1월 2일

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02-2100-8374)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에 관한 이중제재가 해소되어 행위능력 회복 시 즉각 해외 이주알선업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법하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회복되더라도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위반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이중제재가 해소되게 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 추진배경 유명무실한 거주여권 폐지 및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 완화
- 주요내용
 - ① 거주여권 폐지 및 현지 이주자 해외 이주신고 의무 부과
 -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행위능력 회복시 즉각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가능
- 시행일
 - ① 유명무실한 거주여권 폐지 : 2017년 12월 21일
 - ②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 완화 : 2016년 12월 20일

3. 주재국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 공증 신청 가능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02-2100-8173)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재국 신분증으로도 재외공관 공증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재외공관 공증 신청 시 여권 등 국내신분증 제출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 등의 사유로 국내신분증을 미소지한 경우에도 주재국 신분증으로 재외공관 공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가결>재외공관공증법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 개정

- 추진배경 재외공관 공증제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①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주재국 신분증도 신원확인 수단으로 추가
 - ② 재량적 촉탁거절에 대한 이의절차 도입
 - ③ 대한민국 국가기관 요청 문서확인인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직접조회
- 시행일 2017년 3월 21일

1.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절차 개선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044-200-5226)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17.3시행)되어 사후활용계획의 신속한 변경을 통한 박람회장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에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사후활용계획 변경시 관계부처 등 협의 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만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관계기관 등의 협의기간을 단축(현행 20일 ⇒ 개정 14일)하여 사후활용계획의 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 **추진배경**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촉진 등을 통한 박람회장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해 사후활용 변경 절차 개선
- **주요내용**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만으로 가능토록 하여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사후활용 개선절차의 효율화
- **시행일** 2017년 3월

2. 선박출입신고 등 항만민원신고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044-200-5784)

기관별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 됩니다.

- 3개 지방청 및 4개 항만공사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17년 2월 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전국 항만의 선박의 이동 및 화물의 반출입에 관련된 민원 및 행정업무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으로 지방청(부산·인천·여수) 및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운영

- 선박 입항항만 및 업무별로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였으나, 통합센터 구축으로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 됩니다.

-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도입('17년 말)하여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계망(유료)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 인터넷기반 무료대용량 신고지원 표준 전자문서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사업 추진

- 추진배경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막힘없는 해운항만물류 정보 서비스 체계 마련
- 주요내용 Port-MIS 등 7개 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민원신고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공공정보 개방 활용 기반마련 등 항만민원서비스 개선
- 시행일 2017년 2월(예정)

1.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 환경부 |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 032-560-7861)

국내 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R&D)부터 실증실험,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가 2017. 6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 그동안 국내 환경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실증실험 실적확보 등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최초 실증실험 중심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연구단지는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체계적·전문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두할 있도록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초기 입주기업(1~3년)은 임대료·사용료 감면(30~50%), 실증실험 우선지원, 실험분석료 할인(50~70%) 등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주요사업>환경산업 육성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개요

- **위치**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접부지
- **기간** '13~'17(5년), '17.6월 개소예정
- **총사업비** 1,464억 원(국비 100%)
- **면적** 부지면적 18만㎡, 연면적 44천㎡
- **주요시설** 연구지원시설, 파일럿테스트, 테스트베드, 시제품생산지원시설 등



2.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3

소비자의 현재 물가상황을 반영하여 보증금액을 현실화 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
입니다.

- 지난 22년간 빈병 보증금은 현재 물가와 동떨어지게 인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 2017년 1월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
됩니다.

* '17. 1. 1 이후 출고·수입되는 제품에 적용(이전 빈병은 기존 보증금 반환)

-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됩니다.

* (예시) 크기-150% 이상 확대, 색상-붉은색 등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

빈용기보증금액 인상 및 재사용표시 변경

- 추진배경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5.1)
 -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 인상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
후 빈병구분
- 주요내용 ① 빈용기보증금액 인상(소주40원→100원, 맥주50원→130원)
②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150%이상 확대, 붉은색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044-201-6832)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으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단,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현행법령>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 주요내용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으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 가능
- 시행일 2017년 1월 1일(시행잠정, 개정안 행정예고중)

1.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044-201-8204)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의 일부 과목이 달라집니다.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됩니다.
 - 현재 제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검사(PSAT)로, 새로 추가되는 헌법시험은 Pass/Non-Pass 제로 60점 이상인 경우 Pass가 되며 1차 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수험준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5급 공채 및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과 동일한 기준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 TOEIC 700, TOEFL PBT 530, TEPS 625, G-TELP 65(Iv.2) 등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일괄 입법예고('15.2.24)

시험과목 개편

- 추진배경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직무능력 중심 채용 등
- 주요내용 ①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추가
②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③ 6급이하 공채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종합지원팀 (☎ 044-200-4912)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2017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 동 포털은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 별·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상품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행복드림에 상품 구매 사실을 등록하면 사후 위해 발생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 및 피해구제 안내

** 행복드림과 피해구제기관을 연계하여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담접수, 피해구제 신청 및 결과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17년도에는 총 33개 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90개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법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 추진배경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 주요내용 종합적인 상품·안전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통합창구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시행일 2017년 1월

2.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과 (☎ 044-200-4637)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가맹희망플러스 홈페이지 주소 : <http://franchise.ftc.go.kr>

- 지금까지는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열람하여 비교·분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맹희망플러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가맹희망플러스는 ‘어느 업종’의 ‘어떤 브랜드’를 창업할지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법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및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 예방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정보를 손쉽게 비교해서 업종·브랜드를 결정하는데 도움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1.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7)

신속·공정한 권익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는 우편·방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제는 청구부터 진행상황,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청구사례, 처분사례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결례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지식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참고|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홈페이지(www.simpan.go.kr)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추진배경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 개선 및 국민 권리구제 강화
- 주요내용
 - ① One-Stop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13년 6개->'14년 15개->'15년 21개->'16년 21개(누적 63개 기관)
 - ② 행정심판 지식DB(재결례, 청구사례 등) 구축·개방(약35,000건)
- 시행일 2017년 1월(16년 구축 21개 심판기관)

08 농림·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산림청

1

농림축산식품부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 밭고정직불금 40만원/ha 지급
●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ha 지급

After



● 밭고정 45만원/ha 지급
● 조건불리직불금 55만원/ha 지급

2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3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시행일 : 2017년 10월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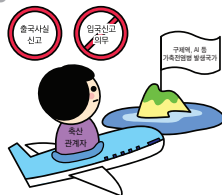
4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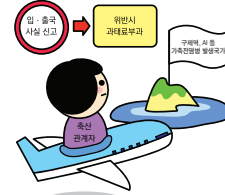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시행일 : 2017년 6월

Before



After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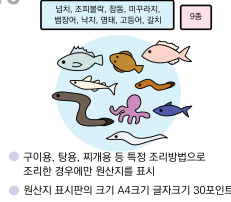
5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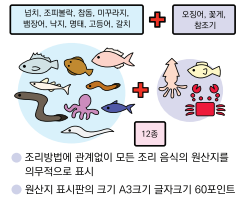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6

해양수산부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7

해양수산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수협
중앙회사업구조 개편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After



8

산림청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시행일 : 2017년 6월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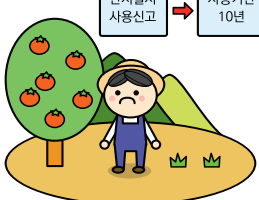
9

산림청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시행일 : 2017년 6월

Before



After



1.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됩니다.

- 2016년에는 ha당 지급단가가 밭고정직불금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각각 45만원과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됩니다.
- 또한,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5,530원, 밖은 ha당 431,648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2017년도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추진배경 (밭고정)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조건불리)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불리 지역 소득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
- 주요내용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① '16년 밭고정직불금 40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 50/ha 지급 → 밭고정 45만원/ha 지급, 조건불리 55만원/ha 각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
 - ② 밭고정직불금도 쌀고정직불금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원/ha, 밖은 약 43만원/ha이며 평균 단가는 45만원/ha)
- 시행일 2017년 1월

2.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6)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 표시방법 :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크기(30p→60p) 확대

-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되어,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2017년 5월 30일부터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7년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되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개선

- 추진배경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주요내용
 - ①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확대(16개→20개)
 -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크기(30p→60p) 확대
 - ③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원료 2순위 표시→3순위)
 -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 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 시행일
 - ①~③ 2017년 1월(의무시행)
 - ④ 2017년 5월 30일, ⑤ 2017년 6월 3일

3.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사고·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농협에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인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하여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영농도우미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에 따른 불편해소
- 주요내용 ①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사항 폐지
② 사업담당자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 확인
- 시행일 2017년 1월

4.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044-201-1820)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양곡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쌀 등급표시제는 수분, 이물질의 함량 비율을 검사하여 쌀에 대한 품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15.12월기준, 73.3%)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6.10.13.공포)하여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7년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도개선에 따른 쌀 유통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1년) 동안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 개선내용

- 추진배경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
- 주요내용 쌀 등급표시제 개선
-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시행일 2017년 10월 14일

5.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044-201-2239)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고,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삼 생산시설 및 기계 등의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철재 해가림,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9종에 대해 구입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 2017년 1월부터는 점적관수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총 10종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원예시설현대화사업(인삼생산시설현대화)

2017년도 원예시설현대화 (인삼생산시설)사업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 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원대상 추가
- **주요내용** 지원대상을 인삼 점적관수시설 추가하여 총 10종 지원
* 10종 : 인삼 점적관수시설(신규), 철재 해가림시설,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시행일** 2017년 1월

6.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개편됩니다.

-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었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되어 일원화 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됩니다.
-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2017년도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사항

- 추진배경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 주요내용
 - ①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농산물품질관리원·민간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
 - ②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
 - (관리기관) 농진청·농관원→농관원, (제도운영) 공시·품질인증→공시
- 시행일 2017년 6월
 - *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일원화는 2017년 1월부터 시행

7. 시설원에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044-201-2256)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노후화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 온실을 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하여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7년에는 대상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고품질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가칭)시설원에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추진(잠정)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계획 개요

- 추진배경 시설원에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① 20ha 규모의 시설원에 생산단지 조성
②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 선정'
- 시행일 2017년 4월

8.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044-201-2325)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 이용자가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승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만 적용받아, 낙마사고 발생시 기승자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2017년부터는 승마 이용자가 상해보험에 가입(1회 당 2,500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일반형, 실속형, VIP형 상품을 출시하여 승마활동 전 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 우선, 농식품부에서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상해보험 의무 가입을 실시(국비, 지방비 보조)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승마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승마, 기승자에 대한 보장보험 도입

- 추진배경 승마시설 운영자의 부담경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용자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하여 승마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1회당 2,500원)
②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학생승마체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1회 2,000원)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9.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044-201-2285)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17~‘21년)’이 마련·시행(‘16.11.22) 되었습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 시행됩니다.
- 또한,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농산물 직거래법(‘16.6.23.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16.11.15.)
- 주요내용
 - ①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강화
 - ②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시행
 - ③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10.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 2017년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의 출입국 신고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 강화
- 주요내용 ①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함
②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11.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총괄과 (☎ 044-201-2363)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됩니다.

* 이력관리란 축산물의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것

●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식육판매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에 추가
- **주요내용**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추가
- (현행)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개정안) 기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시행일** 2017년 7월

12.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총괄과 (☎ 044-201-2353)

2017년 상반기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 법적 강제력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당초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수의사법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 추진배경 무면허 동물 진료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
- 주요내용 현행 무면허진료 시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시행일 2017년 6월

13.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 대상품목은 '16년 66개 품목에서 '17년에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되어 71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배, 단감, 사과, 뽕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7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2017년도 농업재해보험 보장 확대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여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신규 5품목 :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 ② 과수5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에 대한 일소피해 보장
 - ③ 감귤에 대한 보상방식 변경(낙과피해 보상 →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 보상)
- 시행일 2017년 2월

1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3)

2017년 1월부터 농업인이 생존보장 보험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주계약 4형은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천만원 → 3천만원), 휴업(입원) 급여는 상향(20천원 → 35천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30만원 → 50만원)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로 인한 상해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농기계상해특약은 기존의 자기신체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하던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상해특약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보장수준 강화 및 농가 선택 폭 확대

- 추진배경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4형 신설
*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 하향(5천만원 → 3천만원), 휴업(입원)급여상향 (20천원 → 35천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 인상(30만원 → 50만원)
②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상해특약 신설(자기신체손해 + 위자료·휴업손해 등까지 보상),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특약중 선택 가능
- 시행일 2017년 1월

15.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이 유입된 경우에도 해당 병해충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진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규제병해충 : 식물방역법 상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해충
 - * 방제대상 병해충 : ‘예찰·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
-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대상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식물방역법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내용

- **추진배경** 국내 병해충 발생대응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식물의 재배자에게 병해충 발생신고 의무 부과
 - (현행) 신고의무 없음 → (개선)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
 - (신고대상)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16.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는 고위험 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이 현행법상 검역대상(식물 등)이 아닌 ‘목재가구’나 ‘폐지’ 등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수입검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농업·입업 등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중흰개미, 건재흰개미를 의미하며 주로 목재나 가구 내부에 서식처를 확보하여 번식

-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식물방역법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 추진배경 유해 식물병해충 유입차단 체계 보완
- 주요내용
 -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해충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 (현행) 식물 등 기존검역물품 → (개선) 기존검역물품 + 병해충전염우려물품 (이사물품, 목재가구류, 폐지, 침목 등)
 -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17.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우편물 외에 택배(탁송품)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급탁송품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12년) 13천건 → ('13년) 15천건 → ('14년) 405천건 → ('15년) 602천건

●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통관을 방지하고자, 현행 탁송품의 통관체계를 고려하여 탁송업자를 수입검역신고 주체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시 이를 검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식물방역법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 추진배경 유해 식물병해충 유입차단 체계 보완
- 주요내용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현행) 수입자가 직접 검역신청을 하거나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검역신청 (개선) 해당 탁송품을 접수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기관에 고지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18.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그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처리하였으나,
 - 2017년부터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신고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식물방역법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수입식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주요내용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검역신고를 대행하게 함
 -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대행자가 관련법규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함
 - (현행) 검역대행자 자격조건 없음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자에게만 검역대행 자격 부여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19.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격리재배 대상식물 : 묘목·종자 등의 식물은 아직 잎이나 꽃 등이 나지 않아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정밀검사를 위한 격리재배를 실시하도록 함

- 이는 그간 소유자들이 격리재배중인 묘목들을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 부착된 꼬리표(tag)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식물방역법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 추진배경 수입식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주요내용
 - ① 격리재배대상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
 - ② 누구든지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현행) 꼬리표 부착의무 없음 → (개선) 묘목의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꼬리표 부착 의무 신설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20.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제한하였으나,
-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식물방역법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 추진배경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 주요내용
 - 금지품 중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 및 기간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국내 반입을 허용
 - (현행) 수입금지품 수입허용 조건 :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확보용, 국제박람회용 → (개선) 특별 관리를 통한 재수출용 포함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21.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2017년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IPPC :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195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3년 가입

** 2011년부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른 국제기준(ISPM No12)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식물검역증명서를 허용하고 있으며, '14년 3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표준서식이 제정(ISPM No12 appendix 1 신설) 됨

● 이로 인해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식물방역법

전자식물 검역증명서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민원편의 증대 및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여야 함
 - ②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함
 - (현행) 종이 문서인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 →
 - (개선)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인정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22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수출진흥과 (☎ 044-201-2179)

2017년부터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할랄·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 인증 관련 정보·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 신설('16.12.2. 개정, '17.3.3. 시행)

●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1899-0559)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할랄·코셔식품 시장 동향, 통관·검역 등의 정보와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할랄·코셔 식재료 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lal.kfri.re.kr>), 상담실(1899-0559)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주요 사업

- 추진배경 할랄·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기술 등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 주요내용 ① (정보제공) 할랄·코셔식품시장 동향·통관·검역, 국가별 인증제도 등 정보제공
② (인증지원)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할랄·코셔 식재료 DB 구축·제공, 해외 할랄인증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② (인력양성) 식품 생산·수출업체 등 대상 단계별 교육 제공(기초·심화)
- 시행일 2017년 3월(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는 '16.4월부터 운영 중)

23.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7)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 농협중앙회(경제·금융사업 수행)를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로 분리

-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세무적 지원을 이행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 ('12.3월) 금융사업 이관, ('15.2월) 판매·유통사업 이관, ('16.12.31) 나머지 경제사업의 완전 이관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6년간의 사업구조개편 이행 완료

농협 사업구조개편 주요내용

- 추진배경 농업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11.3월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주요내용 ① '17년 이후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하는 교육지원과 상호금융사업 수행
② 경제지주는 기존 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회사 혹은 지주 본체에서 사업 수행)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044-200-5447~8)

'17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에서 3종이 추가된 12종으로 확대됩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어」에 따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개의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도 높아집니다.

-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도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커지고,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9종→12종)
 - *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모든 조리 음식)
 - 원산지 표시판 A3크기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
- 시행일 개정 법령 시행 : 2017. 1. 1. 의무시행(2016. 12. 31.까지 종전 규정 병행)

2.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해양수산부 | 도교섭과 (☎ 044-200-5565~6)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도록 사법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먼저, 무허가 중국어선의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 무허가어선 등에 대한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한·중 양국간 공동단속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순시 및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 추진과 함께,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한중 협력 강화한다

불법 중국어선 사법 처리 강화 및 한·중 협력 강화 항목

- 추진배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및 한중 협력강화
- 주요내용
 - ① 법률 개정
 - 담보금 상향(2억원→3억원)
 - 불법 중국어선 몰수 의무화(양무어선)
 -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구축
- 시행일
 - ① 개정 법률 시행 : 2017. 1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2017. 1월(잠정)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044-200-5431, 5432)

수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수협법 시행('16.12.1)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1.15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수협중앙회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협은행도 안정적으로 은행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민관합동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수협중앙회,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본격 사업 개편

수협 사업 구조개편 주요내용

- 추진배경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개편 추진
- 주요내용
 - ① (지배구조 개편)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 단축(4년→2년), 상임이사의 집행간부 전환(4명) 등 경영의 책임성 강화
 - ② (경제사업 활성화) 수산물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조함·중앙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매년 평가하여 임원 성과관리에 반영
 - ③ (신용사업 독립법인화)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1.15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
- 시행일 2016년 12월 1일

4. 해상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 해양수산부 | 연안계획과 (☎ 044-200-5266)

공유수면 상공을 이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017년 상반기부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이 기존 100분의3에서 100분의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케이블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담 줄인다

신설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근거 내용

- 추진배경 공유수면 상공 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근거 마련
- 주요내용 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근거 마련
- 시행일 2017년 1월
※ 입법 진행중,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표시와 함께 진행상황 기재 요망

5.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상품 개발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044-200-5468)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적용 대상품목을 현행 24개에서 27개로 확대합니다.

* (현행) 넙치, 조피볼락, 돔류, 전복 등 24개 → ('17) 향어, 메기, 터봇

또한, 양식 재해보험 제도의 운용 상 문제점을 어업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 해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관련 보험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거나 특약 세분화(고수온, 저수온)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상품을 개발하여 재해 피해 시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상품개발

- 추진배경 태풍, 해일, 호우, 동해 등에 대응하여 재해어가의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전 도모
- 주요내용 ①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에 대한 보상적용 대상 품목을 현행 24개에서 27개로 확대
② 주계약에 특약으로 어가별 맞춤형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세분화
- 시행일 2017년 6월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044-200-5468)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17년부터 상향 조정(500천원→550천원) 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을 '17년부터 매년 증액하여 '20년까지 어가당 700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17년 사업계획 : 예산 9,030백만원, 20,120 어가

- 낙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민들의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액 상향

- **추진배경** 한·미 FTA관련 與野政 합의('11.10) 및 농어업분야 보완대책('12.1)에 따라 '12년 시범 도입 후, '14년부터 본 사업 추진
* 사업대상은 육지로부터 8km이상(8km미만은 정기여객선 1일 3회 이하) 떨어진 도서(섬)지역(「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
- **주요내용** 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17년부터 상향 조정 (500천원→550천원)
② 향후 '20년까지 어가당 700천원을 지원할 예정
- **시행일** 2017년 1월

7.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044-200-5481)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지금까지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원료 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수산물품질인증서,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1종 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8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보다 간소화되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고시 개정

- 추진배경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고시 개정
- 주요내용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종만 있으면 인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시행일 2016년 12월 1일

8. 수산 벤처·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044-200-5434)

수산업 미래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년부터 운영 중인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 원물을 잡고 단순 가공 후 유통·판매하는 일 이외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추가하여 새로운 수산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 및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지역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재는 부산, 제주,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17년 1개소 신규센터를 추가로 공모선정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산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

- 추진배경 수산분야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수산특화 창업지원센터의 확대 필요
- 주요내용 신규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 추가 예정 (공모선정)
- 시행일 ① 사업공고('16.12.21~'17.1.20)
②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17.1월중)
③ 창업투자지원사업 시행('17.1~12월)

9.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 다양화 및 희망 규격별 신청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044-200-5515)

현재까지 보급되지 않았던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을 다양화하여 어업인들이 원하는 규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규격이 1종류(3호)만 개발되었으나 3가지 종류로 확대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크기의 꽃게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초기 어구사용 유도를 위해 어업인 추가지원액을 꽃게자망 등 신규 진입 어구에 한해 상향 조정(기존 어구가격의 10% → 20%)할 계획입니다.

* 인센티브 : 기존 나일론 가격의 10%로 추가 지원액

2017년 생분해성 꽃게자망 보급 계획

- 추진배경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망 중 가장 규모가 큰 꽃게자망 보급 추진
- 주요내용 생분해성 꽃게자망의 사용 유도를 위해 어업인 인센티브 지원액 상향 조정(기존 어구가격의 10%→20%)
- 시행일 2017년 1월

10.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044-200-5517)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감척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어선감척을 추진할 때에도 대상자 선정과 어업자 지원에 각각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까지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 2017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연근해 어선감척을 신청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입법예고>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절차 간소화 추진계획

- 추진배경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요내용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감척을 집행(수산조정위원회 심의→삭제)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정부이송 대기, 본회의 의결('16.11.17))

11.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044-200-5777)

'17년부터 무역항의 항만보안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자본금 및 상시고용인력 등 요건을 갖춰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근거 마련

- 그동안 항만보안 취약요인으로 지적돼 온 영세 경비업체 난립과 특수경비원의 높은 이직율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비·검색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항만보안업무 수행과 보안인력의 전문성 제고로 항만보안 강화가 기대됩니다.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 **추진배경** 항만 보안 취약요인인 영세업체 난립과 경비원의 높은 이직율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16.12.2. 공포)
- **주요내용** ① 일정 자본금과 상시고용인력의 요건을 갖춰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
② 자본금과 상시고용인력 요건은 하위법령 개정 시 항만의 규모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고, 특수경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질 전망
- **시행일** 2017년 6월 중

12.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044-200-5735)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17년 1월부터 도입·운영됩니다.

- 국민 누구든지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고하고, 부정수급이 입증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하여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웠으나,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 내부고발 활성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항화물운송
사업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추진배경**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주요내용** ① 부정수급 행위 확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
② 지급대상자 확정 시 부정수급량 등에 따라 포상금 산정·지급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3.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5)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던 복잡한 평가기준·지표를 각 항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대폭 위임합니다.

- 현재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서 그 지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에게도 행정적, 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 2017년부터는 평가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평가지표·기준을 항만별 수요자 성격에 맞출 수 있도록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

- 추진배경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제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평가주기 연장(3년→5년)
② 사업실적평가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각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이 항만의 특성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위임
- 시행일 2017년 1월

14.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분양환경 조성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044-200-5920~1)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17년 6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이 개발하거나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 이 밖에도,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검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제도가 신설됩니다.

항만법 개정

- **추진배경**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을 위해 항만법 개정
- **주요내용**
 - 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항만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 생략
 - ②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의 개발 및 분양이 가능해짐
- **시행일** 2017년 6월 중

1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 해양수산부 |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5~6)

공고 대상 사업 외 허가대상사업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투명화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공고 대상사업*에 한하여 평가배점 및 배점기준이 마련 되었으나, 2017년 1월부터 허가대상 사업(유지보수 제외)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30억 원 이상의 귀속 사업 및 투자비 보전 준설사업 등

- 또한, 기존 공고대상사업의 평가항목과 신설되는 허가대상사업의 평가항목 중 '참여자의 구성' 배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하여 실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심사 시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외에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도 인정하여 민간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재원조달 계획 심사 시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에 비해 부족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개별법에 따른 농협, 수협, 산업은행 등의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받는 기술자문의 범위를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소규모 사업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소규모 사업도 기술자문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앞으로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 또한, 기술자문을 받는 기관도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와 시·도지사에게 한정된 것을 공공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해수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대폭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 **추진배경**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체계화·명확화·구체화하고, 항만이용자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
- **주요내용**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공고대상사업→허가대상사업)
 - ② 참여자의 구성 배점 상향(20점→25점)
 - ③ 재원조달 인정 금융기관 범위 확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 추가)
 - ④ 기술자문 범위 규정(미규정→50억 원 이상)
 - ⑤ 기술자문기관 확대(지방청·지자체→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개정안 법제심사 중)*

1.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산림청 | 산지관리과 (☎ 042-481-4141)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간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었으며,
-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또한, 2016.1.21일부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법」에서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년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를 운영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 추진배경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부담금 이종부과 완화
- 주요내용 2016.1.21일 기준으로 전·답·과수원으로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가능
- 시행일 2017년 6월

2.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 산림청 | 산지관리과 (☎ 042-481-4141)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임산물의 재배가 곤란하였습니다.
- 또한, 경미한 형질변경을 통한 대규모 임산물 재배도 제한되어 규모화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임산물재배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임산물재배 절차의 간소화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일 2017년 6월

3.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042-481-4224)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가로수 제거 등의 허가 전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가로수의 제거, 가지치기, 옮겨 심기 등이 행해져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가로수 제거사업 등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 추진배경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가로수의 제거 등에 대한 허가시 심의
- 시행일 2017년 6월

4.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042-481-4224)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건별로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소액일 경우에는 일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소액대부료기준 : 매년 20만원 미만

- 또한,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대부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 추진배경 국민 불편 및 행정 낭비 최소화
- 주요내용 매년 징수하는 국유림의 소액 대부료를 대부기간 중 일괄 징수
 - 대부등 기간 중 대부료 변동이 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소액대부료의 기준금액 : 매년 대부료 20만원 미만
- 시행일 2017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5. 귀산촌인 용자지원 확대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1)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촌정착 안정화를 위해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6년에 비해 190억원이 증가된 240억원을 귀산촌 창업 및 정착자금으로 용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16년) 창업자금 50억원 → ('17년)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원

- 지금까지 창업자금만 용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구입 및 신축을 위한 정착자금을 용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2017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안내

귀산촌인 용자지원 확대

- 추진배경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촌 정착 안정화
- 주요내용
 - ① 용자규모 및 한도
 - ('16) 규모 50억원, 한도 세대당 3억원(창업)
 - ('17) 규모 240억원, 한도 세대당 3억원(창업), 0.5억원(정착)
 - ② 자금용도 확대
 - ('16) 임업분야 창업자금
 - ('17) 임업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자금
- 시행일 2017년 1월

6.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206)

표고종균을 접종·배양하여 수입된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종균을 접종·배양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버섯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국내산’에서 종균 접종 배양국을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 표고버섯 : 국내산 → (변경) 표고버섯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 **추진배경** 표고버섯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 **주요내용**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국내산’에서 종균 접종 배양국을 병기하여 표시
* (기존) 표고버섯 : 국내산 → (변경) 표고버섯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7.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 산림청 | 산림교육문화과 (☎ 042-481-1814)

내년부터 숲해설 일자리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통한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숲해설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17년부터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창업지원 등 민간분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위탁운영 전환으로 인해 숲해설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숲해설 위탁운영의 추진체계와 세부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소개>주요업무계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 추진배경 숲해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숲해설가의 고용을 정부 직접 고용에서 전문업(숲해설업)에 등록된 자에게 위탁운영으로 전환
- 시행일 2017년 1월

8.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 산림청 | 산불방지와 ☎ 042-481-4251

산림재해 대응 관련 4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산림재해 대응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내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의 4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 증가 및 재해 취약시기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배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단기사업 : 산불, 산사태분야 (10,762명, 연간 150일고용)
- 장기사업 : 산림보호, 병해충분야 (1,456명, 연간 250일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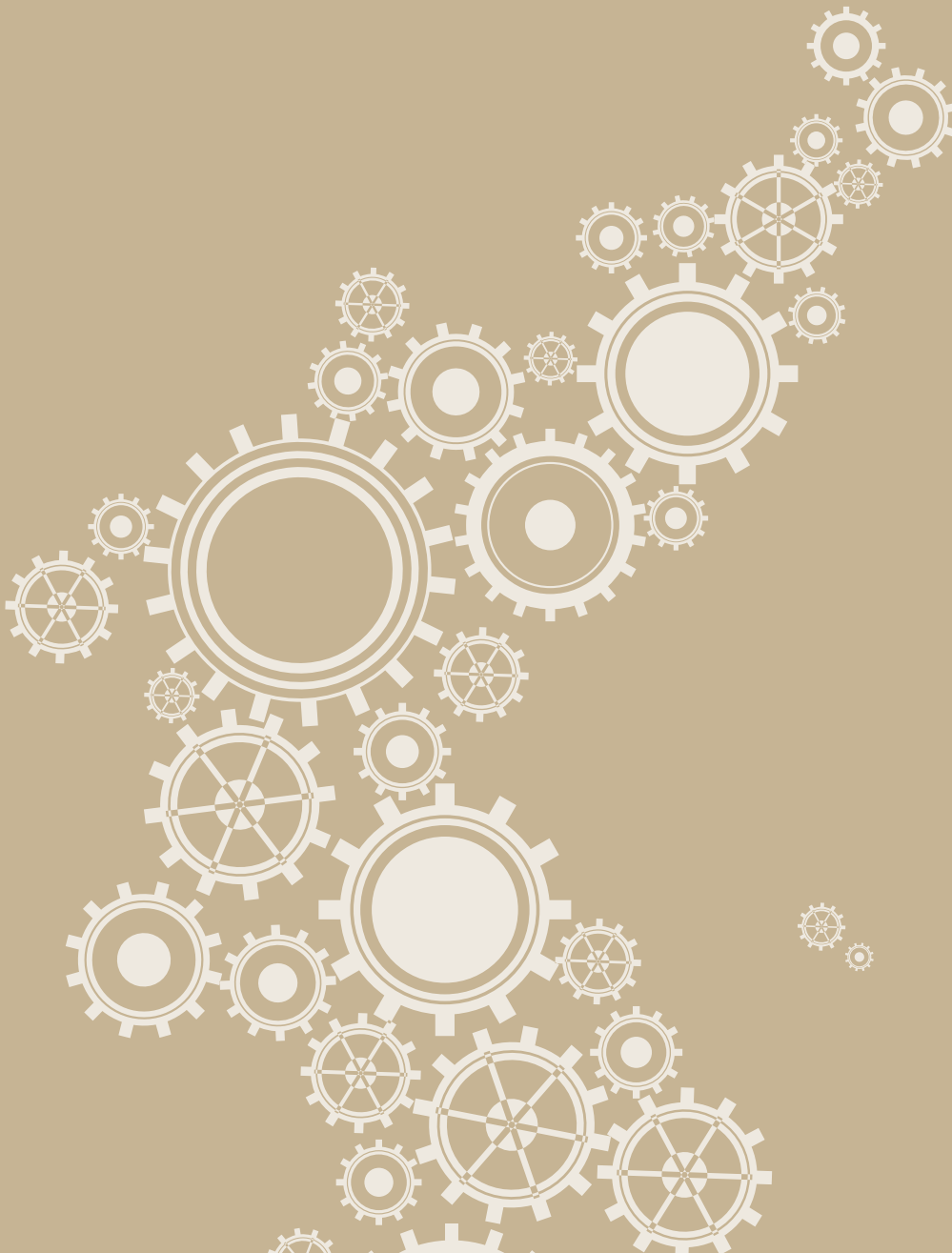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채용정보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 추진배경 산림재해 대응의 효율성 강화 및 고용 안정성 증가
- 주요내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4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통합
- 시행일 2017년 1월

09 국토개발

해양수산부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 해양수산부 |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1~2)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선수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 그 동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초기 방파제 건립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초기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승인 받지 않고 선수금을 받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선수금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 도입
-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17년 1월

10 산업·에너지·자원

미래창조과학부 | 관세청 | 문화재청 | 산림청 | 조달청
중소기업청 | 특허청 | 방송통신위원회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산림청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시행일 : 2017년 6월

Before



After

○○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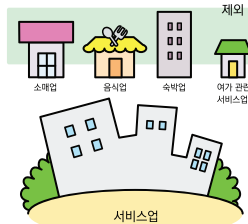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소상공인
자금으로 지원

3

중소기업청

한국형엑셀러레이터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시행일 : 2016년 11월

Before

신설

After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멘토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

4

특허청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시행일 : 2017년 3월

Before



After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인재정책과 (☎ 02-2110-2575)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복지시설의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등 연구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과학기술유공자의 과학기술 조사·연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 과학기술 분야 교육·강연 및 저술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알림>보도자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제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 추진배경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 제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 주요내용 ①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및 연구업적 홍보 등 예우, 사회적 활동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2.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국립전파연구원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0)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기매트 관련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7년 6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의 적용대상입니다.
- 이에 따라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를 관리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인체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적합성평가 제도개선(12.8예정)

일부 가전기기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적용

- 추진배경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 위해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인체보호 확대
- 주요내용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적용
- 시행일 2017년 6월

3.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 이용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정책과 (☎ 02-2110-1998)

DTV대역(470~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 White Space; 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DTV대역(470~698MHz)은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동 조건으로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등 TVWS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으로 인터넷사각지대 해소

TV대역 민간 활용 계획

- 추진배경 TV대역 가용주파수의 자유로운 민간 활용
- 주요내용
 - ① TV대역 주파수 분배(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및 TVWS 데이터통신용)
 - ②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
 - ③ 공원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원격검침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간소화

| 관세청 | 심사정책과 (☎ 042-481-786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함)을 현행 531개에서 462개로 축소하였습니다.

- 유사·중복된 공인기준을 통폐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공인 소요기간을 2개월 단축한 것입니다.

[참고] 관세법령정보포털 3.0>법령>행정규칙>「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2017년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 추진배경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간소화로 공인 소요기간 단축
- 주요내용 유사·중복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통폐합으로 공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단축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부칙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문화재청 | 수리기술과 (☎ 042-481-4864)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운영중에 있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문화재감리는 문화재수리의 사업규모에 따라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은 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음에 따라 상주감리는 비상주감리(문화재감리원 1인 최대 5개 현장 중복배치 가능)에 비해 보다 내실있는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문화재감리 중 상주감리는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만 시행되었으나, 2017년 2월 4일부터는 문화재수리의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 까지 시행되게 됨에 따라 보다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의 감리(상주감리) 강화
 - 당해 문화재수리 : (당초) 30억 이상 → (강화) 20억 이상
 - 주변 정비 사업 : (당초) 50억 이상 → (강화) 40억 이상
- 시행일 2017년 2월 4일

1.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042-481-4204)

수입 목재제품 중에서 연료용을 제외한 10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통관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2017년 6월부터는 규격·품질검사를 판매·유통 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연료용 목재제품인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빠른 시일 내에 태워 없어질 수 있으므로 규격·품질검사를 통관 전에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 추진배경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
* 단,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함
- 시행일 2017년 6월

2.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 산림청 | 산지관리과 (☎ 042-481-4141)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공장을 시설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의 증축 등이 제한되었으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공장을 시설하면 보전산지를 해제하게 되고,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공장의 시설변경 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부터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장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기간까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 추진배경 공장 증축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보전산지에서 공장을 시설하고 보전산지해제 및 지목변경이 된 경우 「국토계획법」 적용으로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공장의 증축이 제한되었으나 「산지관리법」의 용도변경승인기간(5년) 동안은 증축이 가능
- 시행일 2017년 6월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인증평가 축소

조달청 |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인증활용제도 개선('15년 11월)에 따라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적용되던 11개 인증은 '17.1.1.부터 평가 제외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적용된 11개 인증*은 '17.1.1. 입찰공고분부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실용신안, ②GD인증, ③“건” 마크, ④K마크, ⑤Q마크, ⑥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⑦싱글PPM인증, ⑧성과공 유확인제품, ⑨우수재활용(GR), ⑩ 환경표지인증, ⑪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인증평가 축소는 유사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활용제도 개선에 따라 '15.11월에 '17.1.1.부터 시행키로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또한, 인증평가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인도 평가점수 보완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이 0.5점 상향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개정 내용

- **추진배경**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평가 축소 기술능력을 평가
- **주요내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인증평가시 11개 인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은 0.5점 상향 조정
- **시행일** 2017.1.1.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인증평가 축소

조달청 | 쇼핑물기획과 (☎ 070-4056-7293)

인증활용제도 개선('15년)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술항목 평가시 적용되는 인증을 '17.1.1부터 20개에서 11개로 축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기술항목 평가 시 우대 대상 인증이 '17.1.1. 제안 요청분부터 20개에서 11개로 축소됩니다.

* 기술·품질향상 등 관련 인증은 유지하되, 민간인증 및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제외(K, Q마크, 에너지절약 등)

〈MAS 2단계경쟁 우대 대상 인증〉

〈현행〉		〈개선〉	
고도 인증(5)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고도 인증(5)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일반·녹색 인증 (15)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 Q,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일반·녹색 인증 (6)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밀줄인증 : 삭제〉

- 인증평가 축소는 유사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활용제도 개선에 따라 '15.11월에 '17.1.1.부터 시행키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반영된 사항임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개정 내용

- 추진배경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평가 축소 기술능력을 평가
- 주요내용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술항목 평가 시 우대 대상 인증을 20개→11개로 축소
- 시행일 2017.1.1. 제안요청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청 | 기업금융과 (☎ 042-481-4375)

'17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서비스업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이었으나, 2017년 1월부터 융자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와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상시근로자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
- 주요내용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 시행일 2017년 1월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중소기업청

2.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과 (☎ 042-481-39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 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을 의미

- 지금까지는 별도 법적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액셀러레이터들이사업 운영상의 애로를 겪어 왔으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이 제도화됨에 따라, 액셀러레이터가 창업생태계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관련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참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
- 주요내용
 - ① (주요업무)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초기창업자 대상 전문보육 등
 - ② (법인요건) 상법에 따른 회사는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
 - ③ (운영·관리)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1천만원,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지원기간은 3개월
-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3.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중소기업청 | 기업금융과 (☎ 042-481-4375)

내수기업의 수출 성공과 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합니다.

- 수출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정책자금으로 연계 지원하여 수출 성과를 높이고자 신설하는 자금입니다.
 - 수출 계약이나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기존의 수출금융자금은 대출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계속 운영하고,
 - 이와 별도로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하여 대출기간 5년, 분할상환방식의 장기자금 형태로 운영하여 과거 대출금 상환 및 재대출에 따른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추진배경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수출향상 지원
- 주요내용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지원대상 :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
 - 지원범위 : 해외 인증 획득, 판로개척, 수출품 개발 등 소요비용
 -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시행일 2017년 1월

중소기업청

4. 중소·중견기업 R&D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지원

| 중소기업청 | 기술개발과 (☎ 042-481-4446)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대상 선정 시 수출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R&D 지원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중기청 전 R&D 사업의 평가지표에 수출항목 비중을 현행 25%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 수출역량 또는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참고] 중소·중견기업 R&D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참조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 주요내용 11개 세부사업의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조건, 추진방향 등
- 시행일 2016년 12월 12일
- 공고방법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게시

5.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한 기술보호 수단 확대

| 중소기업청 |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8955)

기업의 핵심기술 뿐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원본증명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기술설계도, 소스코드 등 기업의 핵심기술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해 왔습니다.
 - 앞으로는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원본증명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기술보호 수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등록비용의 70%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기술임치 및 원본증명서비스](#)

원본증명서비스

- 개요 계약 전 단계에서의 제안서 및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제공
- 주요내용 ①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아이디어 등을 보호
②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16.10월부터 시범운영 중)

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확대

중소기업청 |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2)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의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16년도에는 중소기업만을 신청대상으로 하였으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 '16.12 → 시행 '17.6)하여 중견기업까지 신청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은 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 유지 ②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③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④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제작 및 부착, 마크 활용(생산제품 및 회사 홍보),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추진배경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하여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을 촉진
- 주요내용 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하여 명문장수기업 선정
② 명문장수기업에 연구개발, 수출, 인력, 자금 등 인센티브 부여
- 시행일 2017년 6월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후 시행할 계획

1.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 특허청 |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7)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권리확정을 통해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했으나, 그 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7년3월1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조정하여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국제적 추세*에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 (일본) 3년, (중국) 3년, (EPO) 2년, (미국) 출원과 동시

** 필요 시 심사유예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심사유예 가능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뉴스 및 공지>KIPO News>2017년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 추진배경 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 경감
- 주요내용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 시행일 2017년 3월 1일*

*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

1.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주요내용

-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하여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수출 및 국산 방송장비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하겠습니다.
- '17.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17.12월 광역시권 및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

-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방송장비 업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방송 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IP기반의 UHD 방송 환경에서 VOD 서비스, 개인 맞춤형 광고, 재난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구현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의결('16.11.11)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추진배경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도입
- 주요내용
 - 지상파 UHD 방송 단계적 도입
(1단계) ('17년 2월) 수도권 지역 UHD 방송 개시
(2단계) ('17년 12월) 광역권 및 평창·강릉 일원 UHD 방송 개시
(3단계) ('20년~'21년) 시·군 지역 UHD 방송 개시, 전국 방송망 구축
- 시행일 2017년 2월

11 환경

해양수산부 | 환경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환경부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신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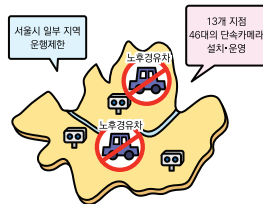
2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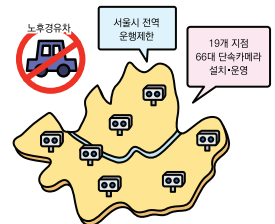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3

환경부

폐기물수집·운반기준
강화시행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1.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044-200-5315)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77종으로 확대됩니다.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바다에서 개체수가 급감 중이거나,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지정

● 상괭이 등 해양생물의 개체수 감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어류, 무척추동물, 연안성·해양성 조류 등 해양생물 25종을 보호대상으로 추가(52→77종) 지정하였습니다.

- 또한, 어업활동 등에 피해를 주는 갯줄풀, 영국갯끈풀을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16.9)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법정관리해양생물(보호대상해양생물+유해해양생물)을 확대 지정하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 보호, 개체수 회복 사업과 유해해양생물의 제거사업을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추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 **추진배경** 고유종,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보호
- **주요내용**
 - 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기존 52종에서 77종으로 확대 지정
 - 해양포유류 1종, 어류 3종,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해양성 조류 14종을 신규로 지정
 - ②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 위반행위
 -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단,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7)

2017년 상반기까지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현재, 오염이 심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해역 중 마산만('08년), 시화호('13년), 부산연안('15년)에 대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역 유입량을 제어해 오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는 울산연안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울산연안 해역의 사회·지리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금속을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 최초 설정하여 배출총량을 할당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금속 기반의 울산연안 오염총량관리 추진

- **추진배경** 중금속 오염 등 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오염총량관리
- **주요내용**
 - ① 총량관리 대상해역 확대(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 '17년 울산연안 추가)
 - ② 총량관리 대상항목 확대
 - 중금속 관리대상 항목 설정 : Cd, Cu, Hg, As, Pb, Zn 등
 - 중금속 배출허용량 설정(배경농도를 고려한 배출부하량 할당 등)
- **시행일** 2017년 6월(울산연안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

3.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 해양수산부 |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2)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체계적으로 실측하고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 (근거) 항만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3, 해양수산부 시행규칙(고시)

- 이를 통해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 합니다.
- 소음 및 대기오염 유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항을 선정하고 3개년 실측 및 분석을 수행하여 중·장기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 추진배경 항만의 대기질·소음의 환경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 주요내용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항만, 부두, 시설 및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 실태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항만별 중·장기 환경관리방안 마련
- 추진경위 및 계획
 - 항만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추진근거 마련 : '15년 3월, 11월
 -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시행규칙·고시) 제정 : '16년 11월
 -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 수립 : '16년 12월
 - 환경실태조사 추진 : '17년 3월~ '19년 12월
 - 항만환경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20년~

1.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환경부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 044-201-6724)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통합) 복잡하게 얹혀있는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 로 통합·간소화
 - (환경관리 최적화)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 부여, 효과적 환경보호 체계로 전환
 - (기술 기반) 오염배출은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도 높이는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 작성·제공
 - (원스톱 서비스)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 (합리적 사후관리)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
-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 추진배경 기존 환경 매체별 복잡한 관리방식을 통합하고 기술 발전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방식으로 전환
- 주요내용
 - ① 6개 법률의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
 - ②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부여
 - ③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제공
 - ④ 허가의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해결
 - 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지도·점검도 통합적으로 실시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 대상 업종 : 전기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등 3개 업종(나머지 16개 업종은 연차적 시행 예정)

2.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044-201-6932)

2016.8.4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실시됩니다.
 -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중이며, '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 추진배경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 주요내용
 - 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
 - ② 단속카메라 설치 : 서울시 13개 지점(46대) → '17년 서울시 전역(32개 지점(112대)) → '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157개 지점)
 - ③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044-201-7014)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 수도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2017.1월부터는 대상시설 신고가 의무화되고, 수질 및 관리기준이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

- 추진배경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물놀이 시설 수질관리기준 도입 시급
- 대상시설 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민간위탁 시설도 포함)
②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주요내용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17.1.28부터)
②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도입·적용
-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수질검사(1회/15일)
- 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보관 등
③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기존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

4.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044-201-7064)

2017년 1월 28일부터 산업단지·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년간 3회 위반한 시설만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2017년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 시설은 65개로 기한은 연도말까지이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참고로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2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위탁·운영중인 시설은 제외)만이 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143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 **추진배경**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및 수질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술진단 도입
- **주요내용**
 - ① 모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② 기술진단 의무대상 시설이 기술진단을 정해진 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5.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044-201-7061)

조류(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의 대상을 기존 호소(호수 등 물이 가두어진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 장관은 조류의 발생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소의 수면관리자나 취·정수시설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장관이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댐이나 보의 비상방류, 조류제거, 취·정수시설 정수처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호소의 수면관리자와 취·정수장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천과 호소를 포함한 모든 공공수역의 관리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현행법령>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조류 피해예방 조치

- 추진배경 조류 피해예방을 위해 호소 뿐 아니라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에서 적극적인 조치 요청 필요
- 주요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6.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 환경부 | 수생태보전과 (☎ 044-201-7044)

국내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68%의 비중('10년, BOD기준)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점오염 관리를 종합하여 연계·조정하는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 2017년부터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을 환경부가 종합하여 5년 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또한, 환경부에서 관계기관의 이행실적을 매년 취합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 강화·보완을 요청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해명>보도자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

- 추진배경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 관리 필요
- 주요내용
 - ① 종합대책 수립(5년마다)
 - 관계기관 소관별(도시·농촌·산림 등),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제출
 - 환경부는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 확정
 - ② 이행실적 평가·보완
 - 관계기관의 소관별 대책의 이행 결과를 매년 환경부 장관에 제출
 - 환경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완·강화하도록 요청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7.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 환경부 | 공원생태과 (☎ 044-201-7312)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자연공원의 관리가 공원관리청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공원 구역 내에서 재산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2017년부터는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경관 보전·관리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원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현행법령>자연공원법(제20조의2)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 추진배경 공원관리 효율성 제고 및 토지소유자 등 지원 필요성
- 주요내용 ① 토지 소유자 등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
② 공원보호협약 체결 상대방에 대한 지원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8.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044-201-7370)

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했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과다적재나 악취 누출 등의 문제점이 차량 선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

-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밀폐형 덮개 설치 등 관련 규정을 2014년 12월에 개정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은 201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2017년도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 추진배경 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 필요
- 주요내용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하여 수집·운반
- 시행일 2017년 1월

9.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044-201-7120)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브롬산염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11년)되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 등을 검사해 왔습니다.
 -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인체위해도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허용 위해수준의 약 1/10로 나타나, 선제적으로 위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수도사업자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5만톤/일 이상 정수장에 대하여 월 1회로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고, 2018년 부터는 모든 수도시설로 검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최근 제·개정된법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17.1.1 시행)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 추진배경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
- 주요내용 ①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
② 2017년 1월1일부터 5만톤/일 이상 정수장부터 적용, 월1회 수질검사 시행
- 시행일 2017년 1월 1일(하루처리 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
※ 2018년 1월부터 모든 정수장 적용(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등)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도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 •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 • (공제율) 중견·대기업 20% <신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조정·확대 •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 10%, 중견 : 7%, 대기업 : 5% • (대상 시설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한 : '18.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상향	감면액 •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 벤처기업 확인 취소시	감면액 •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3년간 75% 감면 세액감면 적용제외 사유 (추가) •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시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사유 해당시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설>	<u>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u> ●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 - (제외비용) 홍보비 등 간접비용, 해외제작비, 정부 지원액 등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공제시기) 비용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19.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와 (044-215-41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u>감면 대상·요건·지역</u> ●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법인·소득세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 관세감면(중소기업 한도 2억) ●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법인·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 관세 감면(중소기업, 50%, 한도 1억) ● 이전 대상지역 - 사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u>감면 대상 등 확대</u> ●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좌 동) - 관세감면 대상 및 한도 확대 (중소·중견 한도 4억) ●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법인·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 관세 감면 감면대상 및 한도 확대 (중소·중견 한도 2억) ● 대상지역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와 (044-215-4133) 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044-215-4412)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u>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u> ● (요건) -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증여 -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 -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 -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 ● (한도) 5억원	<u>장애인신탁 범위 확대</u> ● 증여자 범위 확대 - 타인이 증여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 10% → 7%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금액) - 상속주택가액 × 80% ● (공제한도) 5억원	주택가액 계산방법 합리화 ● (공제금액)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종과제도 ●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종과* *기본세율(6~38%) + 10%p ● ’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년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보유기간 기산일 : ’16.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합리화 -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일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소득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 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원칙)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예정신고기한 연장 ● (원칙) 좌 동 ● (예외)부담부증여시 : 증여세 신고기한* *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소득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가액· 면적 요건 ※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등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 ● (가액요건) 2억원(한옥 4억원) ● (면적요건) - (대지면적) 660㎡ 이내 - (주택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 전용면적 116㎡ 이내) ● 적용기한: '17.12.31	<u>주택연면적 제한 폐지</u> ● (가액요건) 좌 동 - (대지면적) 좌 동 <삭 제> ● (적용기한)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u>소액사건의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u> ● 변호사 ● 관세사	<u>소액사건의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u> ● (좌 동) ● (좌 동) ● 배우자 ●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수입가격이 나중에 확정되는 물품의 관세 납부 및 환급 ● 추가 원재료 세액 납부 → 추가 수출완제품 환급금 청구 (2단계)	<u>수입가격이 나중에 확정되는 물품의 관세 납부 및 환급</u> ● 추가 세액과 추가 환급금 상계 신청 (1단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7. 1. 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4)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 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u>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여부 증명 의무</u>	<u>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여부 증명 의무 면제</u> * 총기류 등 일부품목은 제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관세감면 축소 일정(감면율)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 '17년 40% ● 항공기 부분품 - '17년 80%	관세감면 축소 일정(감면율) 유예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 '17년 60% ● 항공기 부분품 - '17년 10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지원요건 ① '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세제 혜택 (신차) ● 개별소비세 70% 감면 (교육세·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 40% 상당 가산세 시행기간: '16.12.5 ~ '17.6.3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16. 12. 5)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33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u>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u> ● (하이브리드차) 면제한도 : 대당 100만원 적용기한 : '18.12.31. ● (전기자동차) 면제한도 : 대당 200만원 적용기한 : '17.12.31. <추 가>	<u>대상 추가</u>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면제한도 : 대당 400만원 적용기한 : '19.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33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u>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u> ● 24원/kg <u>탄력세율</u>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 21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 27원/kg (5,500kcal 이상)	<u>기본세율 조정</u> ● 30원/kg <u>탄력세율 조정</u> ●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 27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 33원/kg (5,500kcal 이상)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17. 4. 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33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u>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u>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u>납부유예 대상 확대</u> ●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 * 시행령으로 규정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4월 예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u><신설></u>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u>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u> ● '16. 12. 31.까지 <u>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u> ● 300만원	<u>적용기한 연장</u> ● '18. 12. 31.까지 (2년 연장) <u>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u> <table><tr><th>총급여액</th><th>한도</th></tr><tr><td>7천만원 이하</td><td>300만원</td></tr><tr><td>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td><td>300만원 (*18.1.1일부터 250만원)</td></tr><tr><td>1억2천만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총급여액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 (*18.1.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총급여액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 (*18.1.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2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u>근로장려금 지급액</u> <table><tr><th></th><th>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th></tr><tr><td>단독 가구</td><td>70만원</td></tr><tr><td>홀벌이 가구</td><td>170만원</td></tr><tr><td>맞벌이 가구</td><td>210만원</td></tr></table> <u>신청자격 중 주택요건</u> ● 무주택 ● 1세대1주택 ● 일시적 2주택 <u>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u>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단독 가구	70만원	홀벌이 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	<u>지급액 상향조정</u> <table><tr><th></th><th>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th></tr><tr><td>단독 가구</td><td>77만원</td></tr><tr><td>홀벌이 가구</td><td>185만원</td></tr><tr><td>맞벌이 가구</td><td>230만원</td></tr></table> <u>주택요건 폐지</u> ※ 재산가액 1.4억원 미만 요건은 유지 <u>중복적용 허용</u>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단독 가구	77만원	홀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4)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단독 가구	70만원																		
홀벌이 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단독 가구	77만원																		
홀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																		
23.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u>출산·입양 세액공제</u> ● 30만원	<u>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u> <table><tr><th></th><th>출산·입양 세액공제</th></tr><tr><td>첫째</td><td>30만원</td></tr><tr><td>둘째</td><td>50만원</td></tr><tr><td>셋째 이상</td><td>70만원</td></tr></table>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소득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 • (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추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2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소득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6. 12. 31.까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적용기한 • '16. 12. 31.까지	적용기한 연장 • '18. 12. 31.까지 (2년 연장)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적용기한 연장 • '18. 12. 31.까지 (2년 연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소득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적용대상 •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	적용대상 나이요건 폐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u>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u> ● 300만원	<u>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u> <table><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한도</th></tr><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tr><td>4천만원~1억원</td><td>300만원</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사업·근로소득금액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사업·근로소득금액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u>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u> ● 17% <u>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u> ● ’16. 12. 31.까지	<u>세율 상향 조정</u> ● 19% <u>적용기한 연장</u> ● ’18. 12. 31.까지 (2년 연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기술혁신형 M&A 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u>현금지급비율</u> ● 인수대가 중 현금이 80% 초과 <u>주식인수 비율</u> ● (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비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 50% 초과 <u>주식배정</u> ● 피인수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금지	<u>현금지급비율</u> ● 50% 초과 <u>주식인수 비율</u> ● (좌 동) ● (비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 <u>주식배정</u> ● 주식배정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 (대상)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승합차 보유자 ● (혜택) 연간 10만원 한도 -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 ● 적용기한 : '16.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등) ● 적용기한 : '18.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7. 1. 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332)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로열젤리(7%)	<삭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17. 1. 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황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 >보도>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17.7.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44-200-4334)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폴리텍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 신규 개발 등 민간 훈련기관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 및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20~50%	훈련생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5~80% 로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0~50%로 확대(기존 0~30%) ※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17. 1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개편	114개	훈련실적 및 성과 저조 직종 제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등 신산업 직종 포함 ※ (참고) 고용노동부>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방안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17. 1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1)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함	(훈련)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도록 명시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17. 3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044-203-6471)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학의 국제학생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국제화지원지표 도입 ● 외국인 유학생 생활 및 학업 지원 등 대학 전반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어학연수기관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16. 9월) 교육부 대학평가과 (044-203-6806)
K-MOOC 강좌수 확대 및 모바일앱 개발·보급	‘15년 27개 강좌	16년 하반기부터 140개 강좌 개설 모바일앱 개발·보급 ☞ (참고) K-MOOC 홈페이지(www.kmooc.kr)	- 교육부 대학재정과 (02-203- 6611)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까지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까지 확대 인정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16. 10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와 (044-203-6896)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 가능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16. 10월) 교육부 이러닝과 (044-203-6421)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1회에서 2 회로 확대 ● 성적이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지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3학년 → 1~4학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 공표 및 학자금 지원 수혜 예측서비스 제공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중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국외 소득·재산 반드시 신고	해당없음,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2017년~)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618)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수학급의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특수학교에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직업교육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6. 1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816)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관련 규정 없음 (교육감) 학교보건위원회,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교육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교육환경평가 ● 대상: 신설학교 ● 절차: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및 교육감 승인 정비구역내 학습환경 보호 ● 대상: 기존학교 ● 절차: 교육감의 조사 및 협의 관련 규정 없음	(기본계획) 교육부장관 수립, 5년 주기 (시행계획) 교육감 수립, 연도별 (교육감)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장)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환경평가 ● 대상: 신설학교, 기존학교 ● 절차: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교육감 승인으로 교육환경평가 일원화 ※ 정비구역 내 교육환경평가 대상 확대: 기존 정비사업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행위 추가 사후관리 강화 ● 교육감의 승인내용 이행사항 조사·확인 및 사후교육환경평가 요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7. 2. 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개통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비공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공시 및 공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	학점은행제에 관한 법률 (‘16. 9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등 학원법령 개정 내용 안내	부착 의무 없음	교습자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표지 부착 의무 신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11. 30.) 교육부 학원정책팀 (044-203-6380)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무교육단계 학교밖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u>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u> (신설)	- 교육감 직접 개설·위탁* 프로그램,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학습비용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에서 운영 중인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 프로그램	초·중등교육법 (‘17. 2월)
	<u>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지원</u> (신설)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밖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취득 인정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53)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u>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 설비 강화</u> (신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5조, 별표2 신설로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16. 12월)
	<u>특수학교 교지 기준 면적 명확화</u>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2조에 교지기준면적을 학급 수에 따라 면적 제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2조 교지 기준 면적 학급에 순회학급 제외	
	<u>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 적용</u>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1조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1조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907)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 각 1회씩 연장 가능	- 각 2회씩 연장 가능	('17.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신용유의 등록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 대학 재학 및 졸업 후 2년내 연체자 2년간 등록 유예 -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 12%, 보증부대출 9%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연체자도 2년간 등록 유예 -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6%, 보증부대출의 경우 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3개월 이하 10%, 3개월초과 12%	-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		
학업우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일부 면제	- 학업우수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부재	- 소득 3분위 이하 학업우수 대학생 대출원금 30%와 이자 면제(대학 추천→선발)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0)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 확대	- 7개 광역지자체, 9개 기초지자체가 지원	- '18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	- 만35세까지 대출	- 만45세까지 대출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대학교 명칭 사용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학교 명칭 사용 자율화('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16. 10월)	
			교육부 이러닝과 (044-203-6421)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	학력인정 문해교육 (중학교과정) 교원 자격 기준 ● 교사자격증소지자	●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중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그밖에 지정 기관 ☞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의2	평생교육법시행령 ('16. 8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관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267)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80개교 운영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 (300개교 이상 예정) ☞ (참고)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www.ggoomggi.go.kr)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044-203-6715)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신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자료 >올해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진로교육법 (‘16. 8월 16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044-203-7037)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 없음	● 진로희망사항 : 담임교사 ● 창체 자율·봉사활동 : 담임교사 창체 동아리활동 : 동아리지도교사 ●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담당교사(방과후학교의 경우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담임교사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 >교육부,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17. 3월)
	<u>학생부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u> ● 진로희망사항 : 학생, 학부모의 진로희망 구분 기재, 특기 또는 흥미 기재 ● 교과학습발달상황 : 교과목별 특기사항과 방과후활동 등 기재 ● 독서활동상황 : 학생의 독서성향 및 읽은 책, 저자 기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포괄적·추상적 표현의 기재	● 진로희망사항 : 학생 중심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를 기재 ● 교과학습발달상황 : 수업 참여 태도와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과정 및 성취도를 중심으로 기록 ※ 방과후학교 활동은 강좌명(주요 내용 포함) 과 이수시간을 기재 ● 독서활동상황 : 학생이 읽은 책과 저자 중심으로 교사가 확인하여 기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한 종합적 기록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 >교육부,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 교수학습 평가지원팀 (044-203-7034)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本格 시작		<u>부모교육 추진기반 강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확대</u> ●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 ●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 (‘가족행복드림’) 실시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 ●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1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 (문의)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전화(1577-9337)	- (‘17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5)

03 여성·육아·보육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 만원에서 150 만원으로 인상	<u>상한액 135만원</u>	<u>상한액 150만원 인상</u>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17. 1월)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천인 이상 5만원, 천인 미만 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1호 인센티브 10만원 추가 지원, 대규모기업 폐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17. 1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지원	● 대체인력의 인수인계기간 2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가정통신문을 통한 신청	가정통신문 및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 신청	관련법규없음 (‘17. 2월)
			교육부 방과후학교 지원과 (044-203-6372)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신설	직계존속(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면접교섭권 인정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민법	민법 (’17. 6.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6)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지원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으로 확대 자녀 1인당 월 17만원 지원 ☞ (참고) 신청 및 문의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상담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한부모가족 차별금지 및 교육 의무화	- (2017. 1.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5) (02-2100-6342)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영아종일제 만 0~1세아 지원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불편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3개월~24 개월(만1세)에서 3개월~36개월(만2세) 로 확대 임산·출산·보육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하도록 개선 ☞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 ☎ 1577-2514	- (2017. 1.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 (02-2100-6349)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자율적 참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정부·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6.3.2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7. 3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7)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새일센터 150개소 운영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확대 (25→40개 이상) 새일센터 5개소 확충(150개소→155개소) ☞ (참고) 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	- ('17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3)

04 보건·사회복지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학창조일자리 센터 확대 추진	대학당 사업비 5억원	지원대학: 60개까지 확대 대학당 사업비 6억원으로 증액 ● 증가분(1억)은 정부+대학 각 50% 매칭하되, 대학별 학생 대상 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지원	시행지침 ('17. 3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 세 이상으로 의무 확대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의무대상('16. 1. 1.부터)	300인 미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의무대상('17.1.1.부터) ☞ (참고) 고용노동부>정책대상>중장년> 정책자료실>알기쉬운 60세+정년제 30문30답 책자	고령자고용촉진법 ('17. 1. 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6,030원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 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 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6-37호) (‘16. 8. 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7535)
단기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으로 통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2박3일)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1일)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을 통합 →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5일 이내 단기 프로그램)으로 통합	시행지침 (‘17. 3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재학생 직무체험, 5천명 목표로 본격 사업 추진	‘16년 시범사업 지원금 단가 ●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월 20~40만원) ● 운영기관 관리비 (월 3만원)	‘17년 5천명 목표 본 사업 추진 지원금 단가 ● 참여기업 관리자 지원금 단가 조정 (월 20~40만원 → 1인당 월 7만원) 운영기관(대학·민간위탁기관) 관리비 단가 조정(1인당 월 3만원 → 1인당 월 1만원)	시행지침 (‘17. 3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청년내일채움 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16년 하반기 시범사업 청년취업인턴제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금 18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2년간 390 만원, 최대 570만원 지원(300 만원 적립)	‘17년 5만 명 목표 본 사업 추진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I·II 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청년 참여 가능 기업에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지원(300만원 적립)	시행지침 (‘17. 1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5)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재직자만 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만 서비스 제공	구직자도 생애설계 수혜 대상으로 확대 사업주가 민간위탁 통해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 비용 지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마당> 정책자료실>고령화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발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1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지사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특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실시	장애인고용촉진법, 고시 (’17.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확대	장애인 훈련수당 월 16~27만원	장애인 훈련수당 인상 월 31.6만원 (취성패 40만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고시 (’17. 1월)
	장애인 훈련비 단가 3,750원	장애인 훈련비 단가 인상 평균 6,511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시간당 6,300원	시간당 6,520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고시 (’17. 1월)
	880명	1,000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 예규고시>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 용자·지원규정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슬레이트 지붕 정비	● 540만원 기준(1가구) - 수급권자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 70%~50% 보조	● 700만원 기준(1가구) - 수급권자와 차상위 100%, 일반가구 70% ~50% 보조 ☞ (참고) 새뜰마을 홈페이지(www.region.go.kr) >알림>가이드라인 및 지침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가이드라인 (’17. 1월)
집수리	● 700만원 기준(1가구) - 수급권자 100%, 차상위 90%, 일반가구 50% 보조	● 700만원 기준(1가구) - 수급권자 및 차상위 100%, 일반가구 50% 보조 ☞ (참고) 새뜰마을 홈페이지(www.region.go.kr) >알림>가이드라인 및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저소득층 초·중학생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저소득층 <u>고등학교</u>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17년 학교우유 급식사업 지침 ('17.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1)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 수행 지원제도 마련	신설	장애인, 고령자 등의 법정에서 의사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 제도 도입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7. 2. 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	• 상급종합: 60% • 종합병원: 50% • 병원: 40% • 의원: 30%	•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율 20p 씩 인하 -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 20%, 의원: 10%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 1월)
다태아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 7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으로 확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산아 외래본인부담율 인하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 10% 적용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비급여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5,640원/일	(기준액 인상) 5,640원/일 → 10,420원/일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27만원(’16년, 4인가구)	134만원(’17년, 4인가구)으로 확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 1월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8개 직군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 등)	● 14개 직군 - (추가직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참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16. 12. 30)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신설) -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불가 -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 (참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 3452)
위반사실 공표		● (신설)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금지행위(법 제39조의9)로 처벌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표 ☞ (참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폐암검진 시범사업	-	●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수행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암관리법 (’17. 3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인상	●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 지원	● 읍면동당 연간 840만원	지역복지과 (044-202-3122) (044-202-3124)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확대	●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33개소 지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2,100개소 지원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희망키움통장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 가입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 50%이하 가구만 가입 ● 유지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하면 중도 해지	● 소득하한 기준 삭제 -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60% 미만 가구도 가입	변경지침 시달 (‘16. 10월)
		● 소득상한 기준 상향 - 통장 가입 기간 중 가구소득이 증가로 중도 해지되는 소득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70% 까지로 상향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자동차 소득환산율 원칙: 월 100% ※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 자동차 소득환산율 원칙: 월 100% ※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변경지침 시달 (‘17. 1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
전국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u><기준></u>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1개소)만 운영	<u><신설></u>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1개소) 및 지역(17개소) 설치	장애인복지법 (‘17.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044-202-3302)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 신규 운영	●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기관 운영 ● 맞춤형 복지,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11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 신규 운영	●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내 운영 ●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전문 치료 지원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2-2023-334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기능 추가로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2017. 1. 1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222개 운영 청소년심터 119개 청소년동반자 1,066명	CYS-Net 운영 224개 지역으로 확대 청소년심터 123개 확충 청소년동반자 1,146명으로 확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들을 위한 전담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으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지역번호)1388	(‘17년 상반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16. 11. 3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02-2100-627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운영	주거지원시설 276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8개소 가정폭력 피해아동에게 사이버 상담(반디톡톡) 제공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621백만원	주거지원시설 296호로 확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0개소로 확충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운영으로 채팅상담 서비스를 성인까지 확대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지원확대 722백만원	- (‘17년 1월)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25)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월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 간병비 월 105만 5천원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안정 지원금 월 37만 9천원	월생활안정지원금 129만 8천원으로 인상 간병비 월 108만 7천원으로 인상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 월 39 만원으로 인상 '17년부터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1인당 월 630만원 지원(2명분 7,600만원 반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7년 1월)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29, 6430)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증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신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도입	여권법시행령 개정추진중 (2017년 상반기)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1)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진료 과목: 혈압, 혈당측정, 무릎 관절염 진료상담 및 약물 처방 등	낙도지역 의료서비스 지역 확대(‘16년 5 개소 ⇒ ‘17년 10개소)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원 사업 지침 (‘17. 1. 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선원의 유가,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장 강화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 ● 미지급 임금 : 3개월 ● 미지급 퇴직금 : 3년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 확대 ● 미지급 임금 : 4개월 ● 미지급 퇴직금 : 4년 유기구제보험 신설	선원의 유가·사망 및 부상에 관한 선원법 (‘17. 1. 18)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5)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19개 지청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서부, 강원동부, 울산, 경남동부, 경남서부, 경북북부, 경북남부, 전남동부, 전남서부, 전북동부, 전북서부)	21개 지청 (경기동부, 충남동부 추가)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열린마당>보훈처 소식>팝업게시판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17. 2월)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 (044-202-5236)

05 공공안전 및 질서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 기구 정기검사	-	사고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 (참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조제5항 및 별표 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 의무화 ☞ (참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0)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참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0)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u>해바라기센터 37개소</u> <u>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 3,600여개 보급</u> <u>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1개소</u>	<u>해바라기센터 38개소로 확대</u> <u>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4,600여개로 보급 확대</u> <u>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2개소로 확대</u>	- (‘17년 1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5,6386)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4)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u>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68,000여개)</u> ●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u>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u>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기대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11. 30.)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교육과 (02-2100-644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중레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안전한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		<u>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u>	수중레저법 (’17. 5월)
		<u>수중레저활성화 사업 추진근거 마련</u>	
		<u>수중레저사업 신설 근거 마련</u>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7)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u>허용 근거 없음</u>	<u>허용 근거 신설</u>	자연공원법 (’17. 5월)
			환경부 공원생태과 (044-201-7312)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u>냉매 제조·수입시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냉매판매량 신고서 제출</u>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 7월)
			환경부 신기후체제 대응팀 (044-201-6966)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u>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u>	<u>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부지면적은 단일부지 면적으로 적용</u>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 >고시/훈령/예규>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오염토양 반출정화대상 고시 (’17. 0월)
			환경부 토양지하수와 (044-201- 7177)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 15종(고시 별표1,2)	•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 고시/훈령/예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16. 12월)
현행 15종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강화	• 신설	•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형 및 방향제 모든 제형에 사용금지 • 탈취제에 사용되는 DDAC는 섬유용에 0.18%, 실내공기용에 0.0015% 이하 제한 • 탈취제에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제한 • 섬유유연제 알러지 유발 향료의 안전기준 마련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 고시/훈령/예규	
소비자 정보 전달체계 개선	• 신설	• 살생물질이 사용된 경우, 함유량에 관계 없이 성분명칭, 함유량 등 표시, 저위해성· 무독성 등 표현 사용 금지 • 세제류 알러지 유발 향료의 일정 농도 이상시 성분명칭 표시 • 탈취제 대한 품목별 표시사항 추가	환경부 화학제품TF팀 (044-201-6829)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식품과 축산물 유형에 따라 HACCP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분리	식품과 축산물 구분 없이 HACCP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인증원 통합기관에서 모두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 2.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754) 축산물 위생안전과 (043-719-3242)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및 지자체 자체인증제도	음식점 대상 위생수준을 현장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	식품위생법 (’17.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진료비' 까지 확대	사망, 장애, 장례비 보상	사망, 장애, 장례비 및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 확대	약사법 (’17.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05)



국민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 신설	●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 훈련 유형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기별로 실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2016. 7. 19.)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044-205-4149)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시간 확대	● 연간 4시간 이내	● 연간 8시간 이내로 확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2016. 1. 25.)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044-205-4149)
유·도선 사고발생시 보상기준 의화	● 자율 (사망 1인당 1억원 이상 권고)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기준을 사망 1 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2017. 1. 7.)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044-205-4149)

국민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u>다중이용 건물내</u> <u>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u>	민방위기본법 (‘17. 1월 28일)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 통제센터 (044-205-4382)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정밀안전검사 1회 실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실시 <u>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 의무</u> <u>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 의무</u> ☞ (참고) 국민안전처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승강기 이용자 간힘 사고 줄인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7. 1월)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205-429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신설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u>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u> ☞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 법령정보(소관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7. 1. 8)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044-205-5353)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 (CBS) 송출 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시스템 활용 및 <u>통보 지연</u>	<u>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u> ☞ (참고) 지진관측·통보 → CBS 자동입력 및 발송(1~3분 이내 대국민 수신)	지진관측법 (‘15. 1. 22)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6)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50여개 관측지점의 기상관측자료 제공	군 관측지점 150개소를 추가하여 관측지점수 200여개의 기상관측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기관 2,600 여개의 CCTV 영상 제공 ☞ (참고)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저고도>저고도 기상감시	- 기상청 항공기상청 항행기상팀 (032-740-2812)
낙뢰 정보 제공 개선	단방향 낙뢰정보 제공	양방향 낙뢰정보 제공 ☞ (참고) 기상레이더센터홈페이지>낙뢰정보> 우리동네 낙뢰정보	-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02-2181-0863)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상품 정보			
화장품	● 주요성분 표시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상품정보 제공고시 (’17. 2월)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KC 인증 필 유무 표시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KC 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여야 함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공정위뉴스 >보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6)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시행	밀어내기 행위 등 금지 등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대리점법으로 대리점 거래를 규율 대리점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 새로이 규정 밀어내기·경제상 이익 제공강요에 따른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청구 가능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점법 (’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044-200-4517)

06 국방·병무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경력증명서 상근무기간, 상훈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경력을 별도 표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16. 12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국방부 주관필기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주관)으로 대체 ● 군무원 5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군무원 7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군무원 9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18. 1. 1.)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 한 자녀 당 1년 이내	● 한 자녀 당 3년 이내	군인사법 (‘16. 12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 휴직 필수 허가 대상 확대	● 여군에 한함	● 모든 군인(남군, 여군)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3)
중기복무 (5년 이상~10 년 미만) 군인 전직지원기간 부여	없음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부여되던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복무자까지 확대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17. 1. 1)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02-748-6631)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면허·자격과 관계없는 사람도 의무병으로 선발 전 의무부대에 보직(군병원, 사단급 및 연·대대 의무부대)	면허·자격자와 관련 전공자를 전문의무병으로 별도 모집·선발 '전문의무 특기' 부여,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대에 보직 ※ 2~4월 모집·선발, 5월 입영(예정)	병역법 (‘17. 5월)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2)
병봉급 9.6% 인상 (병장 기준, 197 천원→216천원)	이병 : 148,800원 일병 : 161,000원 상병 : 178,000원 병장 : 197,000원	이병 : 163,000원 일병 : 176,400원 상병 : 195,000원 병장 : 216,000원	공무원 보수규정 (‘17. 1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201-8396)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피복류 보급 개선 으로 장병 병영 생활 여건 개선	하계전투복 보급 기준 확대 ● 전투복 3벌(하계 1벌)	● 전투복 4벌(하계 2벌) 지급	- (‘17.1월)
	드로즈 형 팬티 신규 보급 ● 미 보급	● 초도 1개 보급	
	동계 생활모 (비니) 신규 보급 ● 미 보급	● 초도 1개 보급	
	병사 출타용 가방 신규 보급 ● 미 보급	● 출타용 가방 신규보급 (각 군별 정원의 30%, 부대관리) ● 연차별 확보 (18년까지 각각 정원의 15% 물량 확보)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5)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병영생활관 에어컨설치율 45%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율 100%	- (‘17년 상반기 중)
	동원생활관 에어컨 설치	동원생활관 에어컨 설치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9)
제주지역 거주·군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항공권 지원	항공권미지원 (선박승차권만 지원)	제주지역 거주·군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시 연간 2회 이용 가능한왕복 항공권을 지원	- (‘17.1월)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9)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5~6년차예비군 동원지정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미실시	예비군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7.3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비군 휴업 보상금 지급 제도개선으로 권익보장	휴업 보상금의산정 기준 ● 도시가계비 +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100분의 70	휴업 보상금의 산정기준 변경 ●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80	예비군법시행령 (‘17. 3. 1)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38)
	없음	휴업 보상금 지급 절차의법적 근거 마련	예비군법시행령 (‘16. 11. 30)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38)
병무행정 용어 정비	기존 용어 ● 제1국민역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등	용어 정비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법 시행령 (‘16. 11월)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수품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무역대리업자 중개수수료 신고의무 미부여(신설)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에 신고하도록 제도화 ● 미신고 및 허위신고 후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자는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위사업법 제57조의3, 제62조 개정, 제57조의4 (‘16. 12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99)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만 가산금으로 부과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 강화 •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에 마련	방위사업법 제58조 (’16. 12월)
생산성 경영 노력 평가 기준 완화	•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Level4부터 평가점수 부여	• 중소기업은 Level 3부터 평가점수 부여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17. 1월)
경영 노력 평가 점수 확대 적용	•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 각각 10점 적용	• 중소기업은 평가점수 50% 가산적용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94)
기본 보상 이윤 강화	• 기본보상계수 0.2 적용	• 중소기업 기본보상계수 0.3으로 상향조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17. 1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94)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수품무역 대리업 등록제 도입	무역대리업자 등록의무 미부여(신설)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등록의무 부여 • 위법사실 등을 조회하여 등록여부 결정 • 미등록 및 허위등록 후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자는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신설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16. 11. 30)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99)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원가 정산완료시까지 정산유보금 지급 보류	채권 보전서류(보증서 및 보험증권) 제출 시 원가정산 종료 전 정산유보금 지급	방위사업청 예규 계약특수조건 표준 (’16. 12. 8.)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87)
인증 취소 사유 개정	• 원가와 무관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인증 취소	• 인증 취소사유에서 삭제	방산원가관리 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개정 (’16. 10월)
인증 정지 제도신설	• ERP 구축요건 및 성실원가자료제출 위반 시 일괄적인 인증 취소 및 이윤 환수	• 인증정지제도 신설로 업체 부담 완화 - ERP구축요건 1가지 미충족(1개월정지) - ERP구축요건 2가지 미충족(2개월정지) - 하수급업체가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등 (6개월정지/알지못했거나 중대하게 알지 못한 경우 제외) - 기타사유(1개월~6개월 이내 정지)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02-2079- 4277/4217)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역판정검사 (징병검사) 시 결핵검사 신설	<u>미 실시</u>	<u>입영 전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 검사 실시(채혈 후 위탁기관 검사의뢰)</u> ● (대상인원) 연간 약 34만여명 ● (소요예산) 137억원	('17. 1월)
			병역판정 검사과 (042-481-2968)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자)가 복무실, 부대에 머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u>불 산입</u>	<u>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다시 입영 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u>	병역법 시행령 ('16. 11월)
			현역입영과 (042-481-2716)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u>재학생 입영원과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이원화</u>	<u>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통합</u> ● 당해연도 신청시에는 입영일자 선택 ● 다음연도 신청시에는 입영월 선택	병역법시행령 ('17. 3월)
			현역입영과 (042-481-2716)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현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	<u>가산점 서류를우편, 팩스 등으로 의무자가 직접 제출</u>	<u>가산점 서류를 행자부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로 직접 확인 및 처리</u>	현역병모집 업무규정(훈령) ('16. 12월)
			현역모집과 (042-481-2720)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연번	민원사항	비고	연번	민원사항	비고	관계 부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1	경력증명		1	<현행과 같음>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16. 11월)
	2	재직증명		2	<현행과 같음>		
	3	퇴직증명		3	<현행과 같음>		
	4	퇴직예정증명		4	<현행과 같음>		
	5	연수이수확인원		5	<현행과 같음>		
	6	각종 수상확인원		6	<현행과 같음>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7	<현행과 같음>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8	<현행과 같음>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		9	<현행과 같음>		
	10	검정고시 성적증명 (종입, 고입, 고출)		10	<현행과 같음>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종입, 고입, 고출)		11	<현행과 같음>		
	12	검정고시 합격증명 (종입, 고입, 고출)		12	<현행과 같음>		
	13	검정고시 합격증명 (종입, 고입, 고출)		13	<현행과 같음>		
	14	중등학교 졸업학력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14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5	<현행과 같음>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6	<현행과 같음>		
	17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7	<현행과 같음>		
	18	초·중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18	<현행과 같음>		
	19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9	<현행과 같음>		
	20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20	<현행과 같음>		
	21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21	<현행과 같음>		
	22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2	<현행과 같음>		
	23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3	<현행과 같음>		
	24	각종 사실(실적)증명		24	<현행과 같음>		
	25	병사용 학력증명		25	<현행과 같음>		
				26	<신설>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 (044-203-6431)
				27	<신설>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기존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임주권 전매	기존 부동산 매매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분양) 계약을 신고대상으로 추가 주택 외 부동산의 분양·임주권 전매를 신고대상으로 추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 (’17. 1월 20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신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한 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시작전에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하게 협조시 과태료 100% 면제,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후에 단독·최초로 자료제공·성실 협조시 과태료 50% 감경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17. 1월 20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신설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7. 7월(잠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189만원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192만원 최저보장수준(기준임대료): '16년 대비 2.54% 상향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참고·해명자료>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 인상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7. 1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임대) 재계약기준 부재 (매입·전세임대) 재계약 기준 엄격	입주기준(소득·자산) 마련 ● 소득불문자에 대한 소득기준 신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소득기준 일부 조정 ●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 및 기타자산까지 포함 및 자동차 별도 관리 재계약기준(소득·자산) 마련 ●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기준 충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16. 12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4740)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행복주택기획과(044-201-4522)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일시 납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잠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17. 1. 7.)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17. 1. 7.)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9)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신설	장애인, 고령자 등의 법정에서 의사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 제도 도입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7. 5. 3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6.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 절차 생략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 필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 보안 관리 강화된다>국민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16.9월)
			법무부 출입국심사와 (02-2110-4045) 이민정보과 (02-2110-4096)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시행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 없어 국민의 안전이 취약	항공사로부터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정보를 사전에 전송받아 입국부적격 여부 등 확인 및 통보 근거 마련 입국부적격으로 통보받은 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 의무 마련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 항공사 탑승방지 의무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16.9월)
			법무부 출입국심사와 (02-2110-4045) 이민정보과 (02-2110-4096)

행정자치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정정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17.5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번호변경 제도추진단 (02-2100-3838)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 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접수·교부 및 재발급은 온라인 즉시발급 가능 ※ ‘16.12.21자 보도자료 배포 예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고시 (’16.11.30)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7)

행정자치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서비스 제공	●통보 서비스 없음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통보서비스 실시 ☞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17. 1.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 전자적 지문 등록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잉크방식으로의 지문만 등록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 스캐너 활용 지문 등록 가능 ☞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등·초본 발급시 지문으로 신분확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등·초본 발급시 신분확인은 신분증만 가능	●주민센터 방문하여 등·초본 발급시 지문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주민등록재발급 및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시 편의제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만 신분확인가능	●열손가락 지문으로 신분확인 가능 ☞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시 거주불명 제외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시 거주불명으로 등록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시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행정자치부부 주민과 (02-2100-3738)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 추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등 5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 시설입소확인서 등 5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확대 ☞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서식별 중복기재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서류 제출 요구, 행정담당자 입장에서 용어 선택 등	●민원인 작성 항목 최소화, 유사한 서식 통합, 무리하게 통합된 서식 분리, 행정용어를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변경 등 ☞ (참고) 행정자치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u>디지털 여권사진 촬영 시스템 구축</u> ● 84개 공관	● 57개 공관으로 확대	여권법 (‘17. 1월)
	<u>제출서류 및 종이 여권 신청서 작성항목 최소화</u> ● 84개 공관 ● 국내 239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157개 공관으로 확대	외교부 여권과 (02-2002-0179)
해외이주 알선 등록 결격사유 완화	<u>행위능력 회복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등록 가능</u>	<u>행위능력 회복 시 즉시 등록 가능</u>	해외이주법 (‘17. 6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374)
주재국 신분증 으로도 재외공관 공증 신청가능	<u>국내신분증 필요</u>	<u>주재국 신분증으로도 가능</u> ☞ (참고) 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가결> 재외공관공증법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공증법 (‘17. 3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17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절차 개선	<u>관계부처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협의 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u>	<u>관계부처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협의만으로 사후활용계획 변경 승인</u>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17. 3월)
	<u>관계부처 등 협의기간 20일</u>	<u>관계부처 등 협의기간 14일(6일 단축)</u>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6)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출입신고 등 항만민원신고 창구가 단일화 됩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 개별 운영 (3개청, 4개 PA)	해수부 내 통합센터 운영(전국 단일 헬프데스크 등)으로 민원창구 단일화 및 신고업무 간소화	통합센터 Port-MIS 운영 개시 (‘17. 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84)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환경기업, 실증실험 실적확보 등 애로	실증실험 중심의 연구단지 개소(‘17.6) ☞(참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주요사업>환경산업 육성	환경산업법 (‘17. 6)
			환경부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추진단 (032-560-7861)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190ml미만: 20원/개 190ml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이상 1,000ml미만: 50원/개 1,000ml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190ml미만: 70원/개 190ml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이상: 350원/개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자원순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17. 1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보증금 포함제품(소주·맥주 등)에 재사용 표시, 보증금액 표기 의무화 ● 18mm이상	빈용기보증금 변경 전·후를 명확히 구분 ●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150% 이상 확대, 붉은색 등)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자원순환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17. 1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6시간/2년	8시간/2년 ● 단,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현행법령>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7.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험과목 개편	‘공직적격성검사(PSAT)’	‘헌법’ 추가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무원임용 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일괄 입법예고(‘15.2.24)	공무원임용시험령 (‘17.1월)
	7급공채 ‘영어’ 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공무원임용 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일괄 입법예고(‘15.2.24)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가 기관별·분야별로 분리 운영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련 정보와 절차를 파악하기 곤란	종합적인 상품·안전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통합창구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공정위뉴스> 보도>법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17.1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044-200-4912)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서비스개시	가맹희망자들이개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검색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시스템인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 다수의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정보를 한 번에 열람 가능 ☞(참고)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 가맹희망플러스	가맹사업법 (’16. 11. 30.) 공정위 가맹거래과 (044-200-4637)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우편·방문 접수	청구부터 진행상황,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으로 진행 ☞(참고)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홈페이지 (www.simpan.go.kr)	온라인 행정심판서비스 (’17. 1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08 농림·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발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내국인, 1월	’16년 발고정직불금 지급단가 ha 당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ha당 50만원	발고정직불금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 ha당 55만원 ● 발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5,530원, 밖은 431,648원을 지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발농업직접지불제사업,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발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17.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확대 ● 표시대상 품목 : 16개 ● 표시판 : A4 ● 글자크기 : 30p	● 감면액 -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3년간 75% 감면 ● 표시판 : A3 ● 글자크기 : 60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16. 2월) * 의무시행 ('17. 1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위반자 처벌 강화 ● 신규	● 가공품 원료 3순위까지 원산지 표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원산지표시법률 ('17.5.30) *형량하한제 ('17.6.3)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 신청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사항 폐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농도우미 신청절차 간소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17. 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 개선	쌀 등급표시 :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쌀 등급표시 : 특, 상, 보통, 등외 * 미검사 표시 삭제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7.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철재 해가림시설 등 9종에 대해 구입 자금 지원	10종 지원(인삼 점적관수시설 추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인삼생산시설현대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7. 1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9)
친환경 인증 심사 기관 일원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인증체계 이원화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유기 농업 자재 제도 통합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관리기관 이원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일원화는 2017년 1 월부터 시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유기농업자재 공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고시 (’17. 6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시설원예 핵심지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신규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20ha 규모의 시설원예단지 조성 추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17. 3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6)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신규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도입(1회당 2,500원) 학생승마체험에 참여하는 학생 보험료 지원(1회 2,000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17.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5)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신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지원 강화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17. 1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8)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 사실 신고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사실도 신고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17.6.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2)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대상 확대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대상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참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www.mtrace. go.kr)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예 관한 법률 (’17. 7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3)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무면허 동물진료시 벌금형 1 천만원이하	무면허 동물 진료시 벌금형 2천만원 이하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수의사법	수의사법 (’17.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3)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대상품목 : 66개	71개 품목(농작물 55, 가축 16) ● 신규품목 : 시설썩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7. 1월)
	일소피해 보장 : 없음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에 대한 일소피해 보장	
	감굴 낙과피해보장	감굴 품질피해보장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주계약 1~3형중 선택가능	주계약 4형 신설 ●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 하향(5천만원 → 3천만원) ● 휴업(입원)급여는 상향(20천원 → 35천원) ●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 (30만원 → 50만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7. 1월)
		농기계상해 특약 신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신규	신규 식물의 재배자가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물방역법령 (’17.12.3)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식물방역법령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식물 등 기존 검역물품 검역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이사물품, 목재가구류, 폐지, 침목 등) 검역 추가	식물방역법령 (’17.12.3)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식물방역법령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수입자가 직접 검역신청하거나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검역신청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 발견시 검역기관에 고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18.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검역대행자 자격요건 없음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자에게 검역대행자 자격 부여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신규	격리재배대상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의 경우에만 수입금지식물 수입 가능	수입금지식물 중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전자식물 검역증명서 도입	식물류 수출입시 식물검역 증명서 (종이문서)만 가능	국제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전송 가능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신규	할랄·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제공, 성분분석, 맞춤형 교육 등 제공	식품산업진흥법 (‘17.3월)
		☞(참고)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alal.kfri.re.kr), 상담실(1899-0559)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9)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지원,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수행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하는 교육지원과 상호금융사업 수행	농업협동조합법 (‘17.1월)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존 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회사 혹은 지주 본체에서 경제사업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자료>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6 년간의 사업구조개편 이행 완료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넙치 등 수산물 9종(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모든 조리 음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7.1.1) * ‘16. 12.31까지 종전규정 병행
	원산지 표지판 A4크기, 글자크기 30포인트	원산지 표지판 A3크기 이상, 글자크기 60 포인트 이상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8)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담보금 2억원 양무어선 몰수 임의 규정	담보금 3억원 상향 조정 양무어선 몰수 강행규정 한중간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한중 협력 강화한다	EEZ 어업법 및 한중간 합의사항 (‘17. 1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5)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경제·신용 부문 통합조직	지도경제 부문과 신용부문을 분리하여 경제사업 활성화 및 수협은행 창립을 통한 내실있는 수익창출 및 성장 도모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수협중앙회,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본격 사업 개편	개정 수협법 시행 (‘16.12.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해상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규정이 없어 인공구조물 설치에 해당하는 산정기준 (100분의3) 적용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3에서 100분의 1.5로 부담 완화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17. 1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7)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상품 개발	대상품목 24개 고수온 관련 상품을 특약으로 운영	대상품목 27개(+3, 향어, 메기, 터봇) 고수온 관련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거나 특약 세분화(고수온, 저수온 등)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상품 개발	농어업재해보험법 (‘17.1.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	500천원/어가당	‘17년부터 매년 50천원씩 증액하여 ‘20 년까지 어가당 700천원 지원	한·중 FTA관련 여·아 정 합의 (‘17. 1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수산물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4종 이상의 증빙서류 구비	원산지 증명 구비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 종만으로 인정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16. 12월)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1)
수산 벤처·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창업지원센터 3개소	창업지원센터 17개소 추가 확대	수산산업 창업 투자 지원망 구축 지침 ('17.1.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4)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 다양화 및 희망 규격별 신청	인센티브 10% 지원	인센티브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2017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 ('17.1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5)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제9조, 제11조, 제13조)	수산조정위원회 삭제 (제9조, 제11조, 제13조)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 입법예고>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17.1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7)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마련	항만보안법 시행규칙 ('17. 상반기)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7)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부정수급 행위 확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 지급대상자 확정 시 부정수급량 등에 따라 포상금 산정·지급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17. 1.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
항만배후단지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	3년 마다 평가 일률적인 평가지표 및 기준	5년 마다 평가 항만별 특성 및 수요자인 입주기업 성격 등을 반영하여 각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평가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훈령/ 예규/고시/공고>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17. 1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분양환경 조성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 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 설치 신고 필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허가 생략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이 개발 및 분양 가능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검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제도 신설	항만법 (‘17. 6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1)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참여자의 구성 배점 20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술자문기관(지방청, 지자체)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허가대상사업) 참여자의 구성 배점 상향(25점) 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 추가 기술자문 범위(50억원 이상) 기술자문기관 확대(지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등에 관한 요령 (‘17.1)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u>불법전용산지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 가능</u>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1년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 운영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17. 6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u>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함</u>	<u>절토·성토 50센티미만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 가능</u>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17. 6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u>신설</u>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가로수의 제거 등에 대한 허가시 심의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6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u>대부료 매년 건별 부과·징수</u>	<u>매년 부과되는 대부료 등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대부기간 중 일괄 징수</u>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6월),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8)
귀산촌인 융자지원 확대	<u>임업분야 창업자금 지원</u>	<u>임업분야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u>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2017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안내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7. 1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u>‘국내산’ 표기</u>	<u>‘국내산’과 접종배양국을 병기표기</u>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17.7.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6)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u>정부 및 지자체 직접고용</u>	<u>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통한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u>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소개> 주요업무계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교육문화분야 사업계획 (’17. 1월)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042-481-1814)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u>개별 운영</u>	<u>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4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통합</u>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 >채용정보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7. 1월) 산림청 산불방지와 (042-481-4251)

09 국토개발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u>마리나항만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제도 도입</u>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7. 1월)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1)

10 산업·에너지·자원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없음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심의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및 연구업적 홍보 등 예우, 사회적 활동 지원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알림 >보도자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제정·시행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16. 12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02-2110-2575)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성평가 미포함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의무적 적용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 보도자료>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17. 6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0)
TV 대역 가용주파수’ 민간이용 가능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만 가능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 활용(확대)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뉴스 >보도자료>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으로 인터넷사각지대 해소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16.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 (02-2110-1998)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상주감리 시행 ● 당해 문화재수리 : 30억 이상 ● 주변 정비 사업 : 50억 이상	상주감리 시행 ● 당해 문화재수리 : 20억 이상 ● 주변 정비 사업 : 40억 이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2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검사 시기 조정	통관 전	<u>판매·유통 전</u> ● 단,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제외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7. 6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4)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보전산지에 공장을 시설하면 보전산지해제 및 지목변경으로 농림지역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적용	<u>보전산지에서 공장을 시설한 경우</u> <u>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이</u> <u>적용되어 공장의 증축이 제한되었으나,</u> <u>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 용도변경</u> <u>승인기간(5년)동안 공장의 증축이 가능</u>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17. 6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인도 인증 평가	신인도 평가시 녹색·일반인증의 실용신안 등 11개 인증 평가	‘17.1.1.부터 조달청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11개 인증은 신인도 평가에서 제외	조달청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17. 1. 1.)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가점 상향	심사기준별로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 부여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기술 항목 인증 평가	기술항목 평가시 실용신안 등 20개 인증 평가	‘17.1.1.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20개 인증을 11개로 축소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 >고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17. 1. 1.)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070-4056-7293)

중소기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지원불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지원 가능 ☞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 공개>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계획	‘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6. 12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엑셀러레이터 관련 법적 기반 완비	신설	엑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 “한국형 엑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11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3967)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신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 공개>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계획	‘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6. 12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중소·중견기업 R&D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지원	수출평가 비중 25%	수출평가 비중 최대 50% 수출역량 및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고) 중소·중견기업 R&D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 ‘2017년도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참조	2017년도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16. 12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6)
5.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한 기술보호 수단 확대	신설	기업의 제안서에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 본격운영 ☞ (참고) 중소기업청 기술보호유타리 홈페이지> 기술임치 및 원본증명서비스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9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8955)

중소기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확대	중소기업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참조	중견기업 특별법 ('17.6월 시행)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481-6812)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출원일부터 5년 내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내 심사청구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정보마당>뉴스 및 공지>KIPO News>2017년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특허법 ('17.3.1)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2-481-5397)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HD급 지상파 방송, UHD 시험방송	'17.2월 수도권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17.12월까지 광역시권 및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의결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 1426)

11 환경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52종	<u>77종으로 추가 지정</u>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 추가 지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1.1)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확대	<u>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미시행</u>	<u>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u>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 시행	해양환경관리법 (’17. 6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없음	<u>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u>	항만법 해양수산부 시행규칙(고시) (’17.3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2)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업장 허가·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 관리제도 시행	<u><사전준비></u> <u>공식절차 없음</u>	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제공 ●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K-BREF) 등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7. 1월)
	<u><허가신청></u> <u>10개 허가 복수신청</u> ●*(허가서류) 70여종 (유사·중복 다수) ●*(허가권자) 법령별 다양 (환경청, 시·도) ●*(제출방식) 서면제출	<u>1개 통합허가 신청</u> ●(허가서류) 1종(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권자) 1개 기관(환경부장관) ●(제출방식) 온라인(통합환경허가시스템)	
	<u><설치·운영></u> <u>확일적 배출기준</u> ● 시설특성 등 실제 현장여건 미반영	<u>맞춤형 배출기준 설정</u> <u>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기반 관리</u>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044-201-6724)
	<u><사후관리></u> <u>허가사항 불변</u> <u>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u>	<u>주기적(5~8년) 허가보안, 기술지원</u> <u>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u>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서울시 일부 지역(13개 지점) 시행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 운행제한 제도를 서울전역 (32개 지점) 확대 시행 (서울 전역 32개 지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08.3월)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2)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시설별 자체 기준에 의해 관리	대상시설 신고 의무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7. 1월)
		수질 및 관리기준 도입·적용	
		미이행시 벌칙규정 적용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4)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2년간 3회 초과 시설의 경우 기술진단 의무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7. 1월)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4)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호소	호소, 하천 등 모든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7. 1월)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법적 근거 없음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해명>보도자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1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지원 근거 없음	지원 근거 신설	자연공원법 (‘17. 5월) 환경부 공원생태과 (044-201-7312)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u>최소한의 밀폐식 운반차량을 보유</u> ●폐기물 종류에 따라 비밀폐식 차량도 가능	<u>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u> <u>밀폐형 덮개 설치차량</u> ●흄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폐기물 <u>합성수지 포장재로 덮개 설치</u> ●밀폐 용기나 밀폐 상태로 포장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 1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0)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수돗물 수질기준 총 59종	<u>수돗물 수질기준 총 60종으로 확대</u> ●브롬산염 추가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2017년부터 적용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7. 1월)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0)

